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46회 노동포럼

코로나19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일시 2020년 6월 19일(금), 15:30-17:3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212호

사회 ○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발표

1.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 직장생활 변화 및
정부정책 평가
: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 코로나19 노동생활 세계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

1. 오진호 (직장갑질119 활동가)
2.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4.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입장 시 마스크 필수 착용 부탁드립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이 있을 시
출입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민정 연구원, 02-393-1459, klsi.org)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서울연구원

□ 일시: 2020년 6월 19일(금) 15:30~17:3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212호

□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서울연구원

시 간	
14:20 ~ 15:30	등록 및 인사말
15:30 ~ 16:15	<p>[사 회] 박용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p> <p>[발표1]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과 정부정책 평가 -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p> <p>[발표2] 코로나19 노동생활 세계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p>
16:15 ~ 16:25	휴 식
16:25 ~ 17:10	<p>[토 론]</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오진호 (직장갑질 119 활동가)2.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3.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4.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7:10 ~ 17:30	종합토론

목 차

발제1.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과 정부정책 평가	1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2. 코로나19 노동생활 세계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19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1.	55
오진호 직장갑질 119 활동가	
토론2.	61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3.	65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토론4.	71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제1.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과 정부정책 평가

황선웅 |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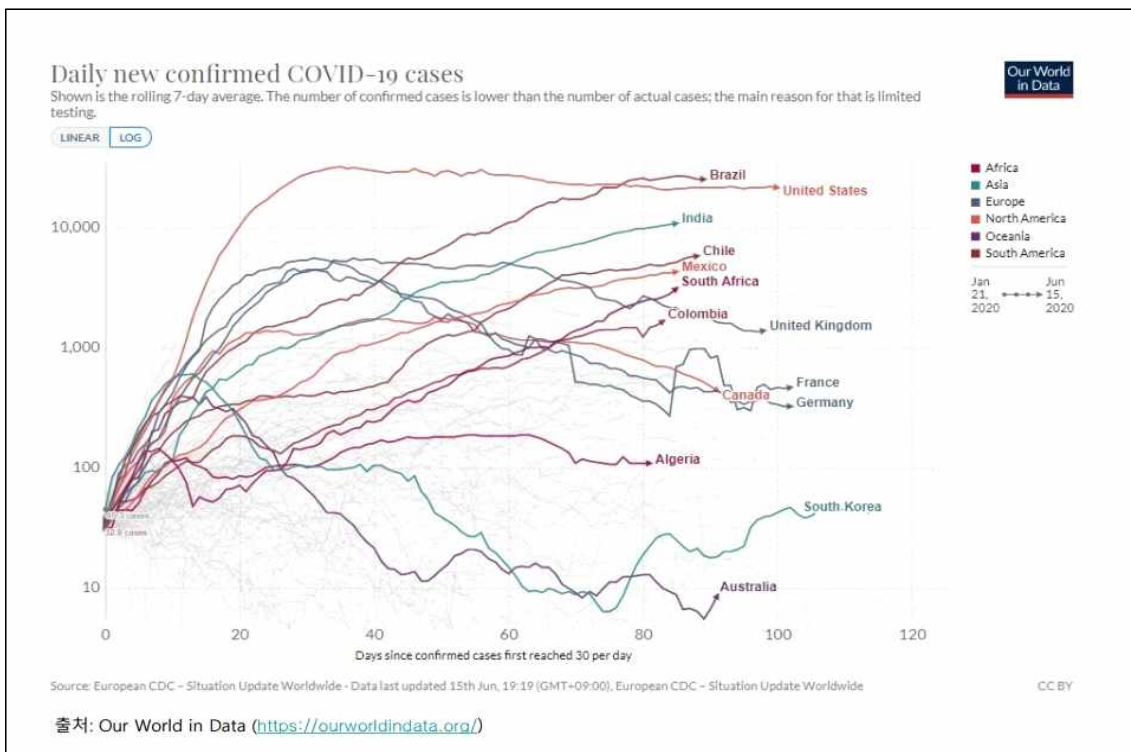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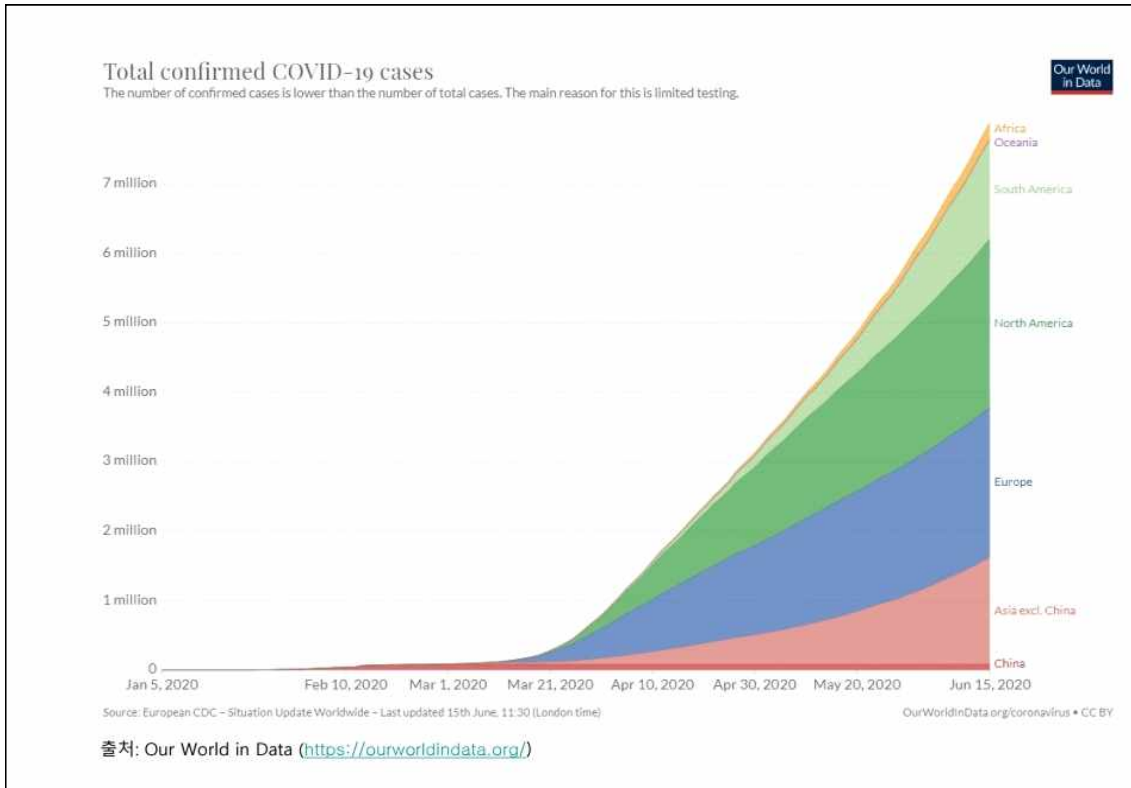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과 정부정책 평가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1

국가 간 고용 영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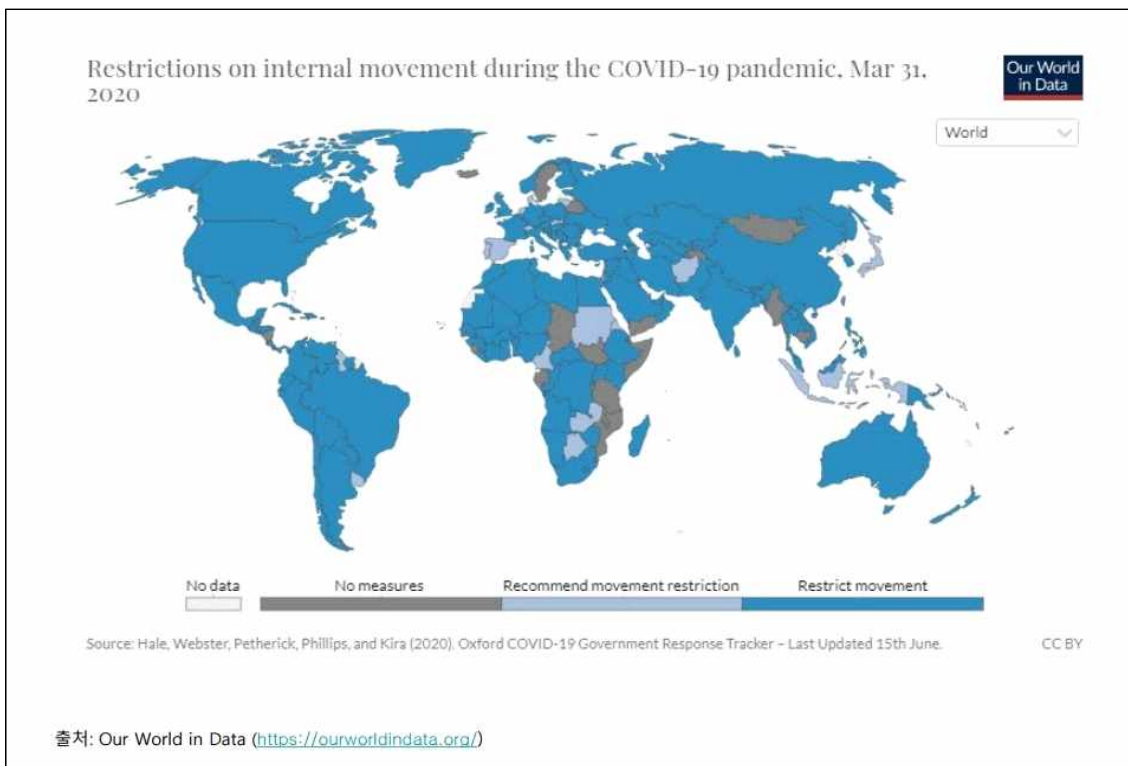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는 비교적 양호
고용감소 억제 성과는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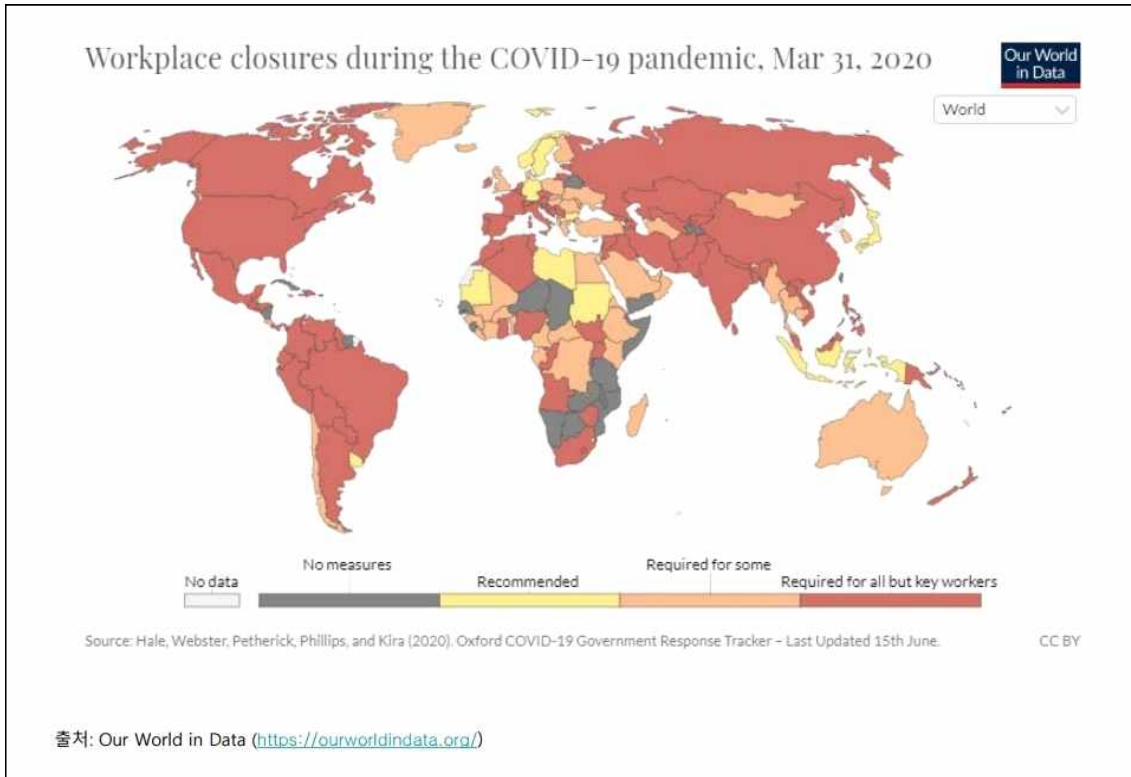


[표 1] 국가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2020년 1~4월

국가	확진자	사망자	사망률	인구 100만명 당	
				확진자	사망자
전세계	3,133,235	227,330	7.3	402	29
미국	1,039,909	60,966	5.9	3,142	184
이탈리아	203,591	27,682	13.6	3,367	458
독일	159,119	6,288	4.0	1,899	75
캐나다	51,587	2,996	5.8	1,367	79
네덜란드	38,802	4,711	12.1	2,265	275
스웨덴	20,302	2,462	12.1	2,010	244
일본	14,088	415	2.9	111	3
한국	10,765	247	2.3	210	5
호주	6,746	90	1.3	265	4
핀란드	4,906	206	4.2	885	37

주: 이 표의 10개국은 이하에서 살펴볼 2020.6.15 현재 4월 취업자 자료 이용이 가능한 국가들임
 출처: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





[표 2] 국가별 취업자 증감 및 증감률: 2020년 1~4월

국가	취업자 증감 (천명)	취업자 증감률 (%)
미국	-25,311	-15.9
캐나다	-2,974	-15.5
일본	-1,150	-1.7
한국	-999	-3.6
호주	-571	-4.4
이탈리아	-431	-1.8
독일	-305	-0.7
네덜란드	-160	-1.8
스웨덴	-94	-1.8
핀란드	-5	-0.2

주: 계절조정계열, 15세 이상 전연령 또는 15~74세, 1월 대비 4월 실적
출처: ILOSTAT, 각국 통계청

[표 3] 국가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대비 취업자 증감: 2020년 1~4월

국가	취업자 증감 / 확진자	취업자 증감 / 사망자
한국	-92.8	-4044.5
호주	-84.6	-6340.9
일본	-81.6	-2771.1
캐나다	-57.7	-992.7
미국	-24.3	-415.2
스웨덴	-4.6	-38.2
네덜란드	-4.1	-34.0
이탈리아	-2.1	-15.6
독일	-1.9	-48.5
핀란드	-1.0	-24.3

[표 4] 국가별 산업생산지수 증감률 대비 취업자수 증감률: 2020년 1~4월

국가	산업생산지수 증감률 (%)	취업자 증감률 / 산업생산지수 증감률
미국	-15.2	1.05
한국	-5.2	0.70
네덜란드	-8.6	0.21
일본	-12.0	0.14
스웨덴	-14.8	0.12
이탈리아	-42.7	0.04
독일	-30.4	0.02
핀란드	0.5	-0.36
캐나다	-	-
호주	-	-

주: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계열) 출처는 OECD.stat 또는 각국 통계청

[표 5] Google 지역사회 이동성 변화: 2020년 1~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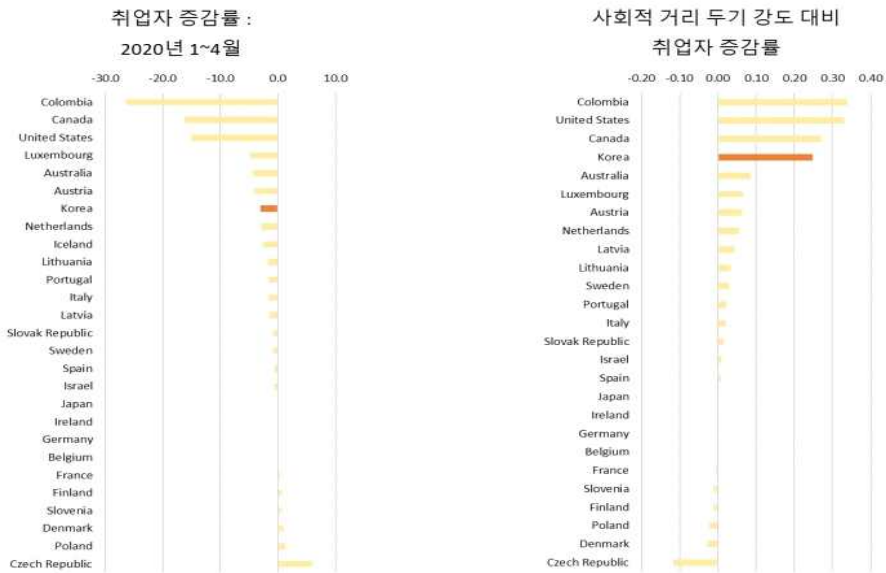
국가	장소별 방문시간 증감률 (%)					
	소매점 및 여가시설	식료품점 및 약국	공원	대중교통 정거장	직장	주거지
이탈리아	-83.4	-47.6	-77.7	-78.3	-63.9	29.2
캐나다	-52.9	-23.9	-7.9	-66.2	-56.1	21.6
독일	-52.3	-11.3	38.9	-48.3	-38.9	14.0
핀란드	-44.0	-12.4	58.3	-56.3	-44.3	13.9
네덜란드	-41.8	-12.9	35.2	-58.8	-43.8	15.7
미국	-41.4	-14.8	-13.1	-49.8	-46.2	18.2
호주	-41.1	-12.5	-35.8	-60.5	-40.1	18.2
일본	-29.2	-0.4	-1.1	-43.2	-21.9	12.0
스웨덴	-19.5	-4.2	64.2	-36.2	-30.0	9.7
한국	-13.0	4.8	36.4	-11.6	-8.3	6.0

주: 장소별 방문시간(방문횟수 및 체류시간)의 2020.1.3~2.6일 대비 4월 같은 요일 증감률 평균

[표 6]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 대비 취업자 증감률: 2020년 1~4월

국가	취업자 증감률 / 소매점 및 여가시설 방문시간 증감률	취업자 증감률 / 대중교통 정거장 방문시간 증감률
미국	0.38	0.32
캐나다	0.29	0.23
한국	0.28	0.31
호주	0.11	0.07
스웨덴	0.09	0.05
일본	0.06	0.04
네덜란드	0.05	0.03
이탈리아	0.02	0.02
독일	0.01	0.01
핀란드	0.00	0.00

강건성 분석: OECD 전체 회원국 자료



주: OECD.stat 월별 계절조정 실업자 및 실업률 자료를 이용해 국가별 취업자 규모 추정.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는 소매점 및 여가시설 방문시간 증감률과 대중교통 정거장 방문시간 증감률의 평균 값 이용

요약

- 우리나라의 취업자(일시휴직 포함) 수는 2020년 1월~4월 사이 약 100만 명 감소 (계절효과 조정; 증감률은 -3.6%)
- 이러한 고용 감소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생산 감소,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등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큰 편
 -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가장 컸음
- 주된 원인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비정규직 및 영세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과 재직자 고용유지 정책의 한계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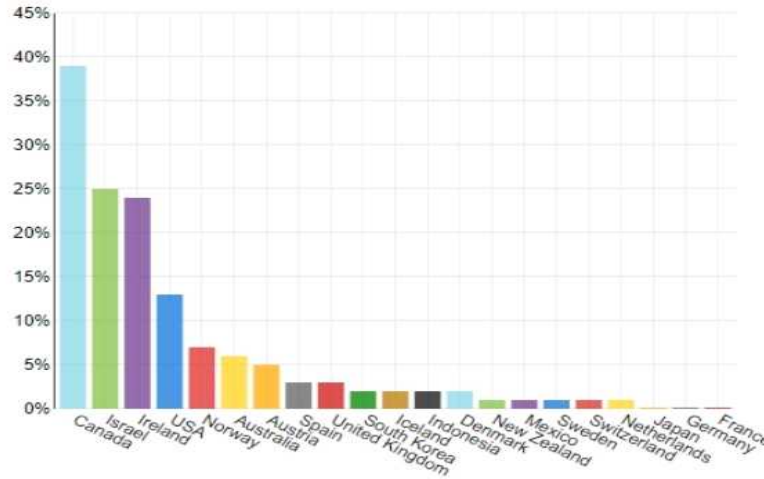
2

기존 일자리 유지 vs 실직자 생계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

코로나19 위기 관련 특별고용대책 유형

- 단축근무 임금손실 보상 (Short-time work compensation)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 한국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휴업), 노사협약 임금감소분 지원
- 고용유지 조건부 금융 지원
 - 미국 :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한국: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지원
- 실업급여 / 실업부조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자영업자 등)
 - 미국: FPUC, PUA 등
 - 한국 : 실업급여 및 긴급고용안정지원 등
- 직접일자리 사업
 - 한국판 뉴딜 (공공부문 비대면 청년일자리 확대 등)

Figure 1. Change in workers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since start of pandemic measured as a percent of workforce in Feb.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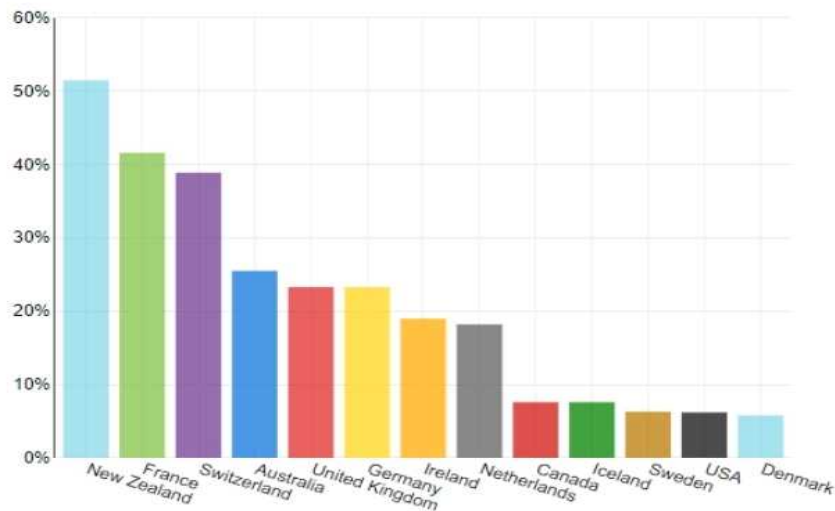


Source: Author analysis of government websites and national media reports.

BROOKINGS

출처: Rothwell and Van Drie (2020.5.27)
<https://www.brookings.edu/research/the-effects-of-covid-19-on-international-labor-markets-an-update>

Figure 2. Change in workers receiving aid through employer since start of pandemic as share of workforce



Source: Author analysis of government websites and national media reports.

BROOKINGS

출처: Rothwell and Van Drie (2020.5.27)
<https://www.brookings.edu/research/the-effects-of-covid-19-on-international-labor-markets-an-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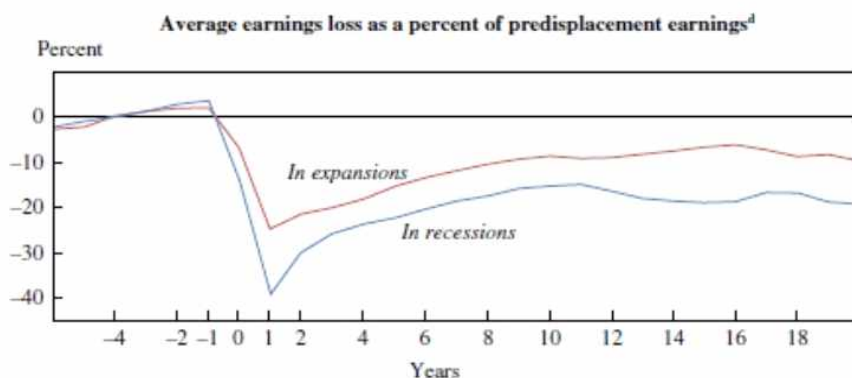
기존 일자리 유지 vs 생계유지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

- 우리 사회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경제적 부담을 노동시장 취약집단에게 집중적으로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음
- 경제위기시 (일시적) 일자리 상실은 경기회복 후에도 소득과 건강 등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업 특수 숙련 상실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Davis and von Wachter 2011; Fujita et al. 2020)
- 2008년 미국 경기침체 사례를 분석한 Fujita & Moscarini(2017)에 따르면, 일시해고 후 기존 일자리로 복귀한 노동자는 소득 수준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한 노동자는 평균 2~12%의 소득 손실을 경험
- Firm-specific human capital is unlikely to be priced correctly, especially when firm and worker are temporarily separated and cannot contract and commit to reunite, although that specific human capital is still viable and would be lost anywhere else. So, policy intervention is indeed called for: government can facilitate that commitment.

일자리 상실의 장기적 영향

- 일자리 상실이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재취업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
- 특히, 경기침체기 일자리 상실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고 지속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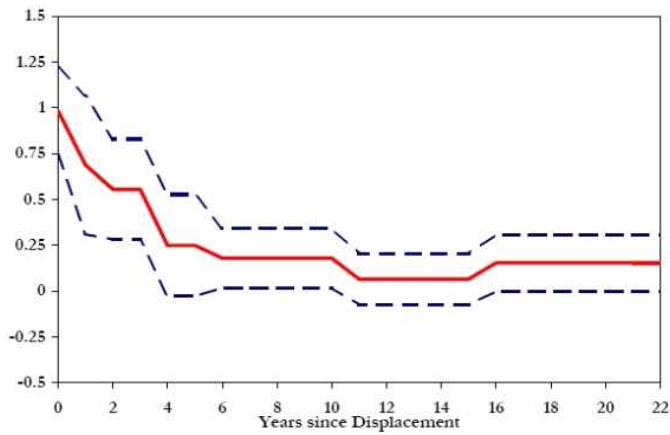
Figure 4. Earnings of Displaced Male Workers before and after Displacement^a



일자리 상실의 장기적 영향

- 일자리 상실 경험은 고용 및 소득 안정성,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망률, 출산율, 이혼율, 자가 보유율, 자녀의 교육 및 소득 수준 등에도 장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침

Figure 2: Percentage Effect of Job Displacement at Mass-Layoff on Mortality Rate by Time Since Layoff (Sample of Men in Stable Employment 1974-1979, Born 1930-1959)



Notes: Solid line represents coefficients of log-odds model shown in Table 4, column (3). Dashed lines represent two-standard errors bands.

출처 : Sullivan & Von Wachter (2007)
 평균 수명 1~1.5년 단축

3

고용유지 지원 정책 대폭 강화 시급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

-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일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역점을 기울여 왔고,
-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4.22 5차 비상경제회의 대통령 모두 발언)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개관

- 1~5차 비상경제회의, 1~6차 경제중대본 회의, 1~3차 추경편성 등을 통해 약 245조원의 코로나19 관련 경제 대책 추진
 - 금융안정패키지 175조원+a, 고용안정대책 12조원, 긴급재난지원금 12.2조원, 기간산업육성방안 40조원 등
 - 1차 추가경정예산 통과(3.17) -방역보강, 중소·소상공인 지원, 민생·고용안정 등 (11.7조원)
 - 1차 비상경제회의(3.19)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50조원 + a)
 - 2차 비상경제회의(3.24) -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지원규모 100조원 + a로 확대)
 - 3차 비상경제회의(3.30) - 긴급재난지원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 4차 비상경제회의(4.8) - 내수보완, 수출활력제고, 스타트업·벤처지원 (56조원)
 - 5차 비상경제회의(4.22) - 기간산업 등 기업안정화 지원(75조원), 고용안정 특별대책(10.1조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 뉴딜 추진
 -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4.29)-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5/7)-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국판 뉴딜 등
 -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5/14)-공공일자리 창출,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

또는 “그 때 그 시절” 정책?

- 김대중 정부 (1998년 위기)
 -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법 제정 / 고용보험 확대 / 공공근로사업 (황소개구리/공공DB 전산화사업/푸른숲가꾸기, 3.2조원 195.3만명)
 - 고용보험 적용대상 98.1월 10인 이상 사업장 / 98.10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임시직/시간제 포함)
- 이명박 정부 (2008년 위기)
 -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무급휴업지원제도 및 교대제 전환 지원 등 도입
 - 직접일자리사업(4.7조원): 공공기관/중소기업 인턴제, 희망근로사업(25만명),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구인구직 DB 확충,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 양성 사업 등
 - 일자리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추진 (일자리 96만개)

해고억제/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전환 시급

재택근무 전환

기존 노동조건 유지

시간 단축

유급 휴직

무급 휴직

권고사직/해고

현행 특별고용안정대책(10.1조원)

재직자 고용유지: 0.9조원

- ▶ 고용유지 자금 용자사업 신설 (0.1조원)
- ▶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지원 (0.05조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0.27조원)
- ▶ 무급휴직 신속지원 신설(0.48조원)

10배

실업자/사각지대 생계지원: 9.2조원

- ▶ 실업자 생계/재취업 지원 (4.1조원)
 - 구직급여, 생계비 용자, 취업지원 등
-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조원)
 -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 월 50만원 * 3개월
- ▶ 공공/청년 일자리 창출 (3.6조원)
 -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등

전환방향

기존 일자리 유지
최우선 전략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



생계/재취업 지원 중심
(미국, 캐나다 등)

고용위기대응 기본 방향

- 성공적 전염병 확산 방지 모델을 고용위기 대응에도!
 - (K 방역 모델?) 지역간 전파 조기 차단 전략, 대규모 진단검사, 신속한 추적(역학조사) 및 격리 조치, 고위험군 중심 치료 집중
vs 확산 억지보다 피해 관리(완화) 집중 전략
- 기존 일자리 유지(해고 억제)를 고용대책 최우선 순위로!
 - 해고확산 방역을 위한 프론트 라인 정책 강화
 - 개별기업 단위 대규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 노동시장 취약계층 중심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강화
 - 현재의 느슨한 해고 방역 및 피해 관리(최소 수준 소득지원) 전략의 시급한 전환 필요

세부 과제

- 시간단축 > 유급휴직 순 고용유지 유인 강화
 - 휴업수당 사용자 부담분 용자 확대 → 일정기간 고용유지시 상환 구제
 - 무급휴직 불법/편법 사용 감시/감독 강화
 -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 인상
 - 노동시간단축 지원 확대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참고)
 - 기업 지원 고용유지 의무 연계 확대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 등 참고)
- 간접고용(파견/용역) 및 하청 노동자 고용유지 대책 시급
 - 제조업 위기시 고용감소 규모는 원청 < 하청
 - 원청기업 사용자책임 강화, 초기업단위 노사 고용유지 노력 지원
 - 기존 상생협력제도 고용위기 대응 전환
 -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조건에 파견용역/하청근로자 고용유지 포함
 - 현행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제도 → 초기업 단위 확대

세부 과제

- 고용유지 / 소득지원 특별 예산 확대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지원 총액 대비 가구소득/고용안정 지원 예산 비중은 약 26% 수준 (고용안정대책 5%, 긴급재난지원금 5%, 기간산업 안정기금 16%)
 - 미국은 가구소득/고용안정(실업급여) 지원 비중만 30% 이상이고, 기업지원도 급여보호프로그램 등 대부분 고용유지 조건 연계
- 긴급생계안정지원 대상 확대*, 신속성 제고,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뿐 아니라 모든 실직자
- 비정규직 권리입법 조속 추진 (사용사유 제한, 노동기본권 강화 등)
- 공공일자리 정책 실효성 제고
 - 규모 확대 / 청년일자리 위기 회복력(resilience) 제고

“참 이상한 나라”의 고용유지 지원 제도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조정 불가피 사유가 인정되는 일반 중소기업 사업장의 평균임금 200만원인 노동자의 경우 (4.1~6.30일)
- 유급휴직/휴업시 : 월140만원 * 최대 180일 (정부 126만원(90%) + 사업주 14만원(10%) 분담)
 - 지원요건: 사업주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고용보험 피보험자
- 무급휴직/휴업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 월 100만원 * 최대 180일 (정부 100만원(100%) 부담)
 - 추가적 지원요건: 피보험자 10인 이상 사업장,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사유, 노동위원회 승인 또는 3개월 이상 유급휴업 실시, 노사합의, 최소 실시 인원 기준 충족, 30일 또는 90일 이상 실시, 고용유지조치기간 + 1개월 이직 금지, 사업주 신청

“참 이상한 나라”의 고용유지 지원 제도

- 무급휴직/휴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2차 경제 중대본 발표)
 - 월 50만원 * 3개월 (정부 50만원 부담)
 - 지원요건: 고용보험 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 해고 후 실업급여 수령시
 - 월 120만원 * 최대 240~270일
 -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or 50인 이상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무급휴직자
 - 월소득 0원

“참 이상한 나라”의 고용유지 지원 제도

- 사업주 귀책사유인 유급휴직 수당 분담금 지급능력 상실, 도덕적 해이 및 불법적 행위의 패널티를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 무급휴직(고용유지)보다 해고 후 실업급여 수령이 유리한 구조
-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무급휴직자를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고용, 영세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정액 실업부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정당치 않음
 - 고용보험 미가입 무급휴직자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노동투입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유급휴업/휴직을 유도하고, 무급휴직 불가피성이 노사합의 및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사업장의 무급휴직자에게는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유급휴업/휴직 정부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
 - 고용유지자금 용자 제공 및 일정기간 고용유지시 상환 구제 제도 도입, 휴업/휴직 이외의 부분적 노동시간 단축 지원 수당 도입 등 필요

발제2.

코로나19 노동생활 세계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본 노동포럼 발제자료(2020.6.19)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이 주로 작성했으나, 작성한 국내외 통계 및 해외 자료는 김민정·홍종윤 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업한 것임.

I. 문제의식 - 코로나 19 영향?

- 새로운 일상과 규범(New normal?)인가? 더 나은 일상과 규범(Better normal!)인가?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의 방역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관계와 삶의 형태, 기업 조직운영 등이 확인되고 있음. 이를 반영하듯 국내 고용동향은 ‘코로나 고용충격’이 확인되었고, 통계발표 이후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최악의 상황으로 확인됨.
-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고용동향 분석 결과,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¹⁾ 이는 앞으로 제도적 개혁이 일자리 문제와 함께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사회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함.
-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10일만에 약 41만명(1일 4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발표되었음. 코로나19 이후 일을 중단한 사람은 대부분 청년과 여성 그리고 임시일용직 등 취약층임. 이들 모두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일자리와 생계를 잃었음. 코로나19는 이들에게 세 번의 충격을 가했음. (1)고용을 파괴하여 소득 손실을 가중시켰고, (2)학업과 교육훈련과 같은 학습도 중단시켰고, (3)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일자리를 이동하려는 사람까지 방해했기에, 코로나19 위기는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임.
- ‘코로나19’라는 유령 같은 녀석 때문에 주위 모든 일상은 바뀌고 있음. 경제활동, 공공행정, 보건의료,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관계 모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하게 했음. TV 및 인터넷 기사 등에서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향후 전 사회가 새로운 규범과 표준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도 이야기 하고 있음. 만약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1998년 ‘IMF 세대’ 이후, ‘코로나19’ 세대로 불릴 것 같음. 학업도, 일자리도, 삶도 모두 통째로 잃어버린 세대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임.

1) 지난 2월 대비 5월 취업자 수가 87만 명 감소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끼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그 상처가 오래 갈 것임을 말해줌. 실업자가 4월 105만 명에서 5월 124만 명으로 19만 명 증가한 것은, 3-4월에는 구직활동을 포기했던 비경제활동인구들이 5월 들어 구직활동에 나섰다기 때문임. 일시휴직자는 2020년 3월 161만 명, 4월 149만 명, 5월 102만 명으로 세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 전체 취업자의 주당 총노동시간은 2020년 2월 10억 9,800만 시간에서 5월 10억 3,600만 시간으로 6,200만 시간(-5.6%) 감소했음. 이를 주40시간 일자리로 환산하면 일자리 155만 개가 사라진 것임(KLSI 《이슈페이퍼》, 김유선, 2020.6).

서울시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급병가나 청년수당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청년 긴급수당’ 신청자 사연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수개월 준비한 공연이 취소되어 소득이 없어진 배우와 스태프부터, 아르바이트와 일감이 끊긴 프리랜서 청년까지. 모두들 긴급 청년수당 (월 50만원, 2회) 신청 사유로, “월세와 통신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거나, “교통비나 생활비 부족” 등을 적었다. “아껴 쓰겠으니, 꼭 선정해주세요!”라는 글귀를 읽을 때 가슴 한쪽이 아리고 막막했다.(경향신문, 2020.6.12., 김종진)

- 코로나19로 인한 비말 전파가 우려되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대면 업무나 서비스(오프라인)가 중지 혹은 축소되고, 비대면 업무나 서비스가 진행(온라인/모바일 등) 되고 있는 상황임. 새로운 일자리로 이야기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일자리’들 또한 ‘디지털 일자리’ 확대(정부 비상경제회의와 일자리대책 발표, 2020.4. 5)가 강조되면서, 향후 일자리 자동화/무인화/플랫폼화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됨.
- 그렇다면 **첫째**, 코로나19 시기 국내외 노동시장의 고용은 어떤 상황인가? **둘째**, 코로나19 시기 국제기구(ILO) 및 개별 국가들의 정책 대응방안이나 프레임은 무엇인가? **셋째**, 코로나19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 및 작업장은 어떤 상황으로 변화될 것이며, 긍정성과 부정성은 무엇으로 예측되는가? **넷째**, 현 시기 우리가 검토·논의해야 할 과제(보편적 사회적 보호제도, 불평등과 차별 문제 등)는 무엇인가?

II. 코로나 19 시기 현재 전 세계 상황과 쟁점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3월 한달간 전 세계 노동시간이 6.7% 감소(2/4분기)하고, 전 세계 33억명(48시간 정규직 기준 1억9천900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발표했음(2020.4.7.). 주요 국가의 노동시간 감소는 1/4분기 4.8%에서 1/4분기 10.7%로 초기에 비해 두배 이상 감소했음([표1]). 초기 고용감소 현상은 주로 서비스부문과 영세사업장 및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들에서 나타나고 있음.
- 국제기구(ILO, OECD, EU)들은 코로나19 초기 2주 동안의 상황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세계 위기로 평가하기도 했음. 국경과 지역, 거리가 봉쇄되면서, 경제활동이나 생산량이 감소하고 직장폐쇄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급격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경제활동 감소로 일자리들이 감소로 나타남. 한국도 5월 통계청 고용동향 지표를 보면 실업이 약 13만3천명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5만 5천명 증가하여, IMF 구제금융 이후 최악의 상황임.

[표 1] 코로나 19 위기 시기, 노동시간 감소 추이 비교 (ILO - 2020년 1/4~2/4 분기)

국가	1/4 분기	2/4 분기
전 세계	4.8%	10.7%
*저소득	1.7%	8.8%
*중저소득	1.9%	11.4%
*중상위 소득	8.8%	9.9%
*고소득	2.3%	12.2%

* 자료 : ILO Monitor 2nd edition: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ILO(2020.4.7.)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Fourth edition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ILO(2020.5.27.)

* 한 국 (2020년 5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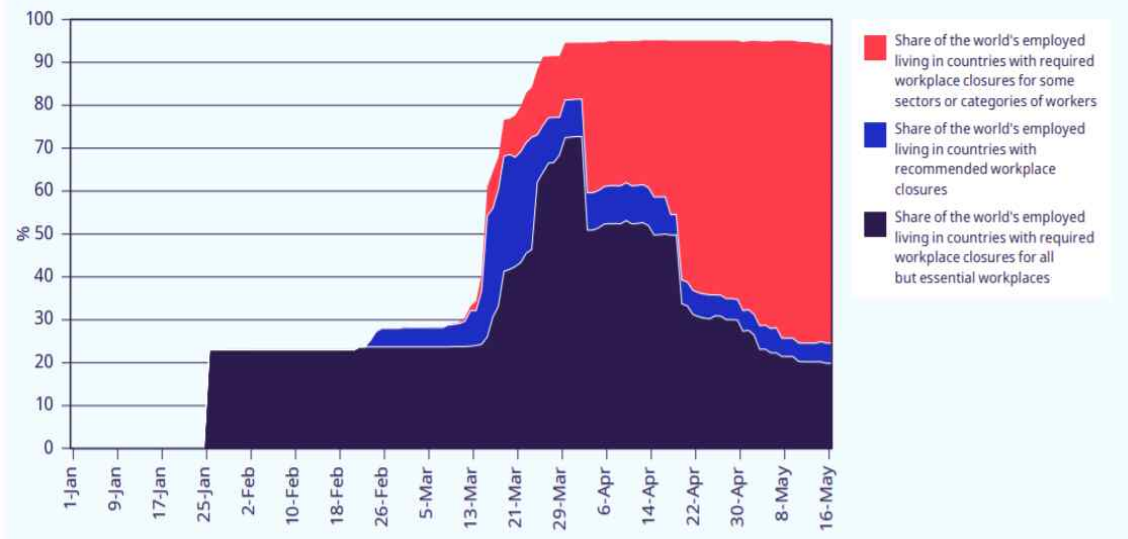
: 실업률 4.5%(청년층 10.2%), 실업자 127만8천명(13만3천명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1,654만6천명(55만5천명 증가), 도소매/음식숙박/기타 개인서비스 취업자 감소

* 전 세계 (2020년 5월 17일 기준)

: 2020년 3월부터 직장 폐쇄가 급격히 증가했고, 2/4분기 시기에 약 69% 정도의 국가/지역에서 직장 폐쇄가 필요한 지역에 거주.

▶ Figure 1. Relaxation of lockdown measures is leading to a declining share of workers in countries with general workplace closures



자료 : ILO,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Fourth edition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ILO(2020.5.27.)

[표2] 전 세계 코로나 19 경제영향, 위험노출: 부문별 조망(ILO, 2020.4.7)

경제부문	경제산출에 미친 영향 정도	고용현황 기초자료 (코로나 이전 2020년도 국제 추정치)			
		고용인구 (천명)	국제 고용참여율 (%)	임금률 (월평균부문소득/ 평균 총 소득)	여성비율 (%)
교육	하	176,560	5.3	1.23	61.8
보건 및 사회복지	하	136,244	4.1	1.14	70.4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하	144,241	4.3	1.35	31.5
공익사업(협회)	하	26,589	0.8	1.07	18.8
농업, 산림 및 어업	중하*	880,373	26.5	0.72	37.1
건축	중	257,041	7.7	1.03	7.3
금융 및 보험업	중	52,237	1.6	1.72	47.1
광업 및 채석업	중	21,714	0.7	1.46	15.1
예술, 예능, 레크리에이션 및 기타 서비스	중상*	179,857	5.4	0.69	57.2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중상*	204,217	6.1	1.19	14.3
숙박 및 외식업	상	143,661	4.3	0.71	54.1
부동산, 사업 및 행정	상	156,878	4.7	0.97	38.2
제조업	상	463,091	13.9	0.95	38.7
도매 및 소매업; 차량수리업	상	481,951	14.5	0.86	43.6

자료 : ILO,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ILO, 2020.4.7)

주 : 국제 차원의 부문별 고용 분포에 대한 ILO 실시간 재무 데이터 및 통계 기초자료 평가

*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은 하위 부문을 포함하는 부문을 나타냄.

[표3] 전 세계 코로나 19, 경제위기 노출 및 고용 분야 (ILO, 2020.4.29)

	경제 미친 영향	고용주와 자영자 인원(100만명)		전체 노동자 중 해당 사업장 노동자 비율(%)		
		고용주 인원	1인 자영자 인원	1인 자영자 사업장 노동자	2-9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10인 이상 사 업장 노동자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수리업	상	21	211	45	25	30
제조업	상	12	99	19	15	66
음식숙박 서비스	상	7	44	29	29	41
부동산 : 비즈니스 행정활동	상	7	35	21	23	56
예술, 예능, 레크리에이션 및 기타서비스	중상	4	57	30	31	39
운송, 창고, 통신	중상	4	76	31	19	50
건축	중	9	103	38	26	36
금융보험 서비스	중	1	3	6	11	83
광업, 채석	중	1 이하	3	28	14	58
농업, 임업, 어업	중하	19	470	55	30	15
보건 및 사회복지	하	2	11	7	14	79
교육	하	1	7	5	14	81
공익사업(협회)	하	1 이하	3	10	13	77
행정국방, 사회보장	하	1 이하	0	2	8	90

자료 : ILO,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Third edition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ILO(2020.4.29.)

- ILO(2020.5~5)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저임금 영세사업장에서 고용 감소 및 실업 증가가 나타났고,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과 같은 곳에서 여성과 청년, 저임금, 영세사업장 고용이 감소했음. 한편 전 세계 청년 실업률은 청년 여성(13.1%)과 청년 남성(14%) 차이가 크지 않지만, 비경제활동인 청년니트(NEET) 비율은 젠더 차이(청년 여성 31.1% ↔ 청년 남성 13.9%)가 확인됨.²⁾

[표4] 전 세계 코로나 19, 청년고용 타격 분야 (ILO, 2020.5.17)

	경제 미친 영향	2020년 고용 추정치 (코로나19 이전)		
		고용률 (백만명)	청년고용률 (%)	청년 여성 고용률 (%)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수리업	상	74.8	17.5	41.7
제조업	상	59.2	13.8	36.9
부동산 : 비즈니스 행정활동	상	16.4	3.8	43.8
음식숙박 서비스	상	28.1	6.6	50.8
운송, 창고, 통신	중상	21.0	4.9	16.4
예술, 예능, 레크리에이션 및 기타서비스	중상	28.4	6.6	60.3
광업, 채석	중	2.9	0.7	22.6
금융보험 서비스	중	4.6	1.1	54.7
건축	중	33.1	7.7	5.4
농업, 임업, 어업	중하	123.7	28.9	36.0
공익사업(협회)	하	2.0	0.5	21.3
행정국방, 사회보장	하	8.6	2.0	33.3
보건 및 사회복지	하	11.8	2.7	74.2
교육	하	13.2	3.1	69.5

자료 : ILO,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Fourth edition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ILO(2020.5.27.)

- 한국도 이와비슷한 상황이며, 지난 2020년 1/4분기까지 노동시장의 고용 감소와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그냥 쉽 등)가 증가되었음. 특히 청소년·청년 연령층인 15세에서 20대까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고, 서비스업(아르바이트, 파견)에서 고용 감소가 컸음([참조 1,2]). 게다가 여성과 고령층에서도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은 음식숙박/보건복지/제조/공공행정 등의 분야 감소와 연동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면에 정보통신 분야는 코로나19시기 비대면, 언택트 등과 연동되어 오히려 취업자가 증가했음([참조 3]).

2)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Fourth edition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ILO(2020.5.27.), p.7.

[참조 1] 한국의 전국 및 서울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변화(단위: 천명, %)

	경제활동인구 변화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2019년 1/4분기		2020년 1/4분기		2019년 1/4분기		2020년 1/4분기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체 인구	27,702	5,252	27,911	5,308	16,668	3,233	16,781	3,183
10대(15-19세)	236	37	205	33	2,436	410	2,310	386
20대	4,084	923	3,993	892	2,333	464	2,469	512
30대	5,692	1,207	5,654	1,217	1,621	316	1,532	279
40대	6,696	1,205	6,574	1,200	1,647	336	1,684	308
50대	6,528	1,123	6,542	1,141	1,983	410	2,013	379
60대 이상	4,466	757	4,942	825	6,648	1,298	6,774	1,32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분기 자료

[참조 2] 한국의 전국 및 서울지역 취업자 변화 - 연령, 성별(단위: 천명, %)

취업자 수	전체				여성				남성			
	2019년 1/4분기		2020년 1/4분기		2019년 1/4분기		2020년 1/4분기		2019년 1/4분기		2020년 1/4분기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체 취업자	26,461	4,972	26,749	5,070	11,249	2,235	11,435	2,327	15,212	2,738	15,314	2,743
10대	208	33	183	31	112	19	103	17	97	14	81	14
20대	3,691	833	3,645	813	1,919	484	1,853	476	1,772	349	1,792	336
30대	5,499	1,154	5,476	1,169	2,129	499	2,146	506	3,371	654	3,330	662
40대	6,522	1,165	6,419	1,174	2,658	476	2,620	501	3,863	688	3,799	673
50대	6,331	1,086	6,346	1,100	2,702	461	2,709	492	3,629	626	3,637	608
60대이상	4,209	702	4,680	784	1,729	296	2,004	335	2,480	407	2,676	449
15-64세	24,285	4,631	24,270	4,678	10,348	2,101	10,353	2,159	13,937	2,531	13,917	2,5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 3] 한국의 취업자 변화 - 성별, 연령, 고용, 산업업종(단위: 천명, 계절조정)

		취업자 수(천명)				증감(전월 대비)				변동 계
		2월	3월	4월	5월	2월	3월	4월	5월	2월-5월
전체		27,522	26,842	26,504	26,657	-680	-338	153	-1,018	-865
성별	여성	11,904	11,467	11,287	11,391	-437	-180	104	-617	-513
	남성	15,618	15,375	15,217	15,265	-243	-158	48	-401	-353
연령	15-64세	24,645	24,169	23,895	23,981	-476	-274	86	-750	-664
	15-29세	3,888	3,731	3,679	3,734	-157	-52	55	-209	-154
	60세이상	5,296	4,918	4,860	4,913	-378	-58	53	-436	-383
고용형태	임시직	4,723	4,364	4,271	4,370	-359	-93	99	-452	-353
	일용직	1,368	1,297	1,229	1,282	-71	-68	53	-139	-86
	비임금노동자	6,744	6,643	6,594	6,558	-101	-49	-36	-150	-186
산업업종	숙박음식점업	2,285	2,178	2,089	2,136	-107	-89	47	-196	-149
	농림어업	1,529	1,533	1,425	1,406	4	-108	-19	-104	-12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2,385	2,268	2,254	2,303	-117	-14	49	-131	-82
	제조업	4,454	4,422	4,397	4,374	-32	-25	-23	-57	-8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1,129	1,039	1,053	1,052	-90	14	-1	-76	-77
	협회단체수리기타	1,229	1,204	1,147	1,163	-25	-57	16	-82	-66
	건설업	2,018	2,008	1,940	1,957	-10	-68	17	-78	-6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1,343	1,326	1,309	1,287	-17	-17	-22	-34	-56
	교육서비스업	1,862	1,780	1,758	1,809	-82	-22	51	-104	-53
	운수창고업	1,507	1,476	1,450	1,471	-31	-26	21	-57	-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185	1,132	1,144	1,151	-53	12	7	-41	-34
	부동산업	548	532	525	520	-16	-7	-5	-23	-28
	도매소매업	3,560	3,535	3,549	3,540	-25	14	-9	-11	-20
	예술스포츠여가관련	516	481	487	509	-35	6	22	-29	-7
	금융보험업	796	785	793	790	-11	8	-3	-3	-6
	전기가스증기공기	77	72	65	72	-5	-7	7	-12	-5
	광업	14	16	15	13	2	-1	-2	1	-1
	가구내고용활동 등	95	91	89	96	-4	-2	7	-6	1
	국제 및 외국기관	17	17	18	20	0	1	2	1	3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43	146	149	149	3	3	-	6	6
정보통신업	849	846	852	864	-3	6	12	3	15	

자료 : 김유선(2020), 「코로나 위기와 5월 고용동향」, 《이슈페이퍼》, 제131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9~10쪽 재구성(원자료: 통계청 KOSIS).

- 2008년 금융위기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고용 회복기간은 최소 약 5개월~7개월 남짓이 필요했었음.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폐쇄(자동차 등)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조·건설, 운수·통신 및 지원 서비스 등 수출 산업에도 영향(2/4분기 이후)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생활방역으로 전환(2020.5.6.) 이후 내수 일부가 회복되더라도, 지역사회 및 기업조직 등 '조용한 전파'가 나타나는 것으로 고려하면 전망은 밝지는 않음.

□ 코로나19 시기 고용일자리와 제도개혁 문제

-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20년 코로나19 초기(1/4분기)는 긴급생계비지원(미국 : 현금 살포 ‘헬리콥터 머니’, Jordio Gali, 2020)을 통해, 현재 삶을 버틸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1/4분기~3/4분기에는 노동시장 실업과 연동하여 기업 고용유지제도 개선방안 모색(유럽 : 일자리 유지 ‘바주카포’, Luis Garicano, 2020)이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산업재구조화 모색이 검토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음.
- 국내외 하반기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가운데(IMF, 한국은행, 2020.4)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준 충격은 균일하지 않고, 비공식 경제나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해 질 수 있음(비공식 노동자 빈곤상승, ILO, 2020). 이들 다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이거나 사회보장 밖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임. 현재는 사람(국민)을 보호하고, 향후 경제회복을 도와야 할 시점(Jason Furman, 2020)이라는 지적을 잊지 말아야 함.

*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뉴욕타임즈 칼럼 기고(2020.4.13.)

<https://www.nytimes.com/2020/04/13/opinion/sunday/covid-workers-healthcare-fairness.html>

Are We All in This Together?

The pandemic has helpfully scrambled how we value everyone’s economic and social roles.

코로나 위기 동안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 노동자는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과 종속적인 노무제공자(한국의 경우 특수고용-플랫폼노동 등) ……(중략)…… 노동법과 사회적 보호를 못 받는. 코로나를 지나고 난 뒤 어떤 세상이 될까? 여전히 불평등이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노동에 정당하게 보상하는 안전한 세상에 우리가 살 것인가? 등.

- 한국에서도 2/4분기부터 ‘실업급여’ 신청(5월 실업급여 : 29세 이하 37.8%, 50대 34.9%, 60대 31.4% 등 / 제조업 22,200명, 도소매업 14,000명, 건설업 13,500명, 사업서비스 11,900명, 보건복지 10,000명)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대폭 증가했음. 현재 상황은 항공, 관광, 숙박,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예측됨. 또한 3/4분기 고용위기 지정업종에서는 그나마 고용유지(3개월 남짓)가 되겠지만, 한시적 휴직 혹은 전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협력업체, 파견용역, 비정규직 등 중심으로 권고사직, 긴박한 경영상 사유로 실질적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 이런 이유로 정부도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경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10.1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정책(286만명 지원)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노동자 생활안정(특고, 프리랜서 포함),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으로 요약됨.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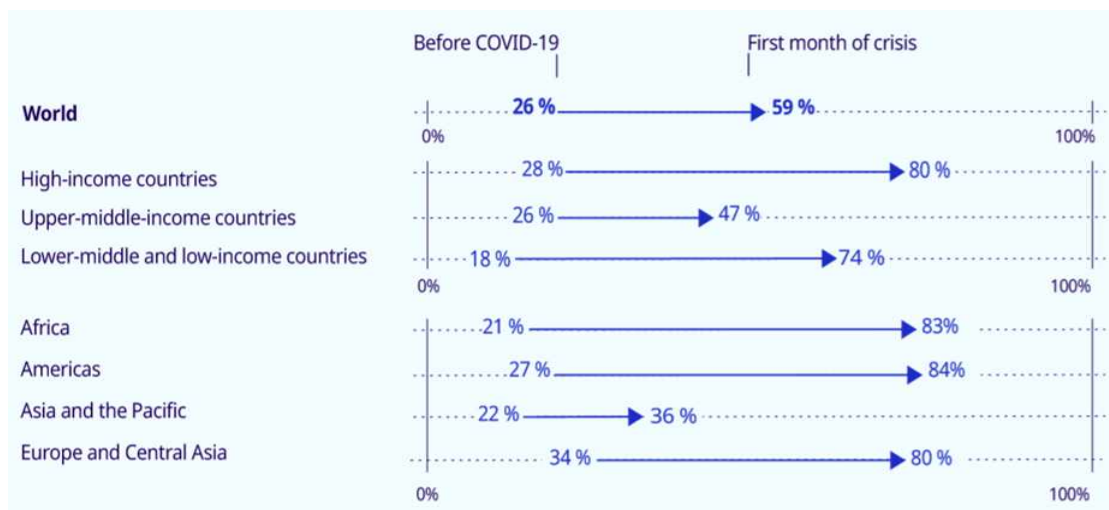
밖에 광역(서울시, 경기도 등)과 기초(성남시, 전주시 등)에서는 개별 정책으로 소상공인, 문화 예술, 자영업자, 취약노동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 지원정책을 모색하고 있음.

- ①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②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③긴급 일자리 창출, ④실업대책 4대 분야
-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저변 확대 : 0.9조원(52만명)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등)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 1.5조원(93만명)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월50만원 × 3개월)
-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 : 3.3조원(50만명)
(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등)
-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확대 : 4.4조원(91만명)

□ 코로나19 시기 해외 경제 및 노동 대응 사례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예방 및 강력한 정책 조치를 취하고 있음. OECD와 ILO는 코로나19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각 국들도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비공식부문의 빈곤과 소득 감소 등 노동시장 문제점이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고, 코로나19 시기 전 세계 비공식 고용은 청년(15세~24세)은 76.7%(여성 73%, 남성 79%)로 청년층 이외 집단(59.8%, 25세 이상 : 여성 56.9%, 남성 61.6%)에 비해 16.9%p 높은 상황임.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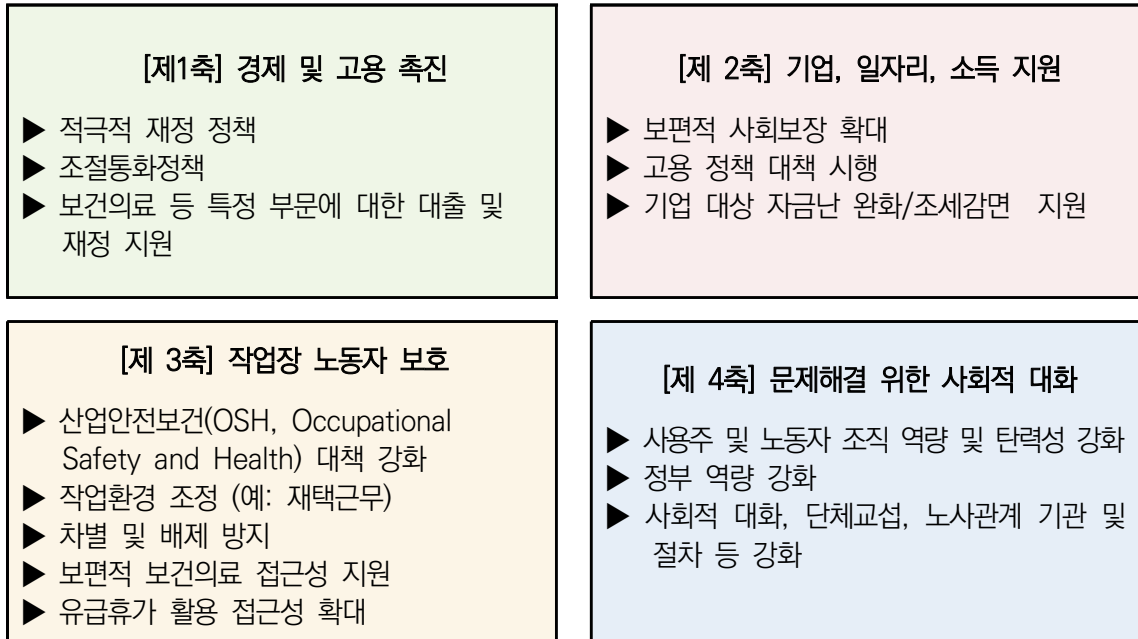
[그림 1] 비공식 노동자 빈곤 수준에 대한 전염병 잠재적 영향 : 비공식 노동자 빈곤율 상승 예상치



자료 : ILO,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Third edition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ILO(2020.4.29.)

3)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Fourth edition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ILO(2020.5.27.), p.14.

[정책 프레임] 코로나 극복 위한 4개 주요 축(pillar)



* 자료 : ILO Monitor 2nd edition: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ILO(2020.4.7.)

○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 시기 정책 대응방향으로 4가지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고, 주요하게는 △경제 및 고용촉진, △기업, 일자리, 소득지원, △작업장 노동자 보호, △사회적 대화가 핵심 영역임. 한편 코로나 19시기 개별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고용 및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초기에는 7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제시되었음. 주로 코로나19 대응은 일자리 상실 및 소득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소득 지원(독일 : 3일만에 지급), 노동자 유급휴가 및 재택근무, 고용유지 조치와 지원 등임.

- | | |
|---------------------|----------------------|
| (1) 사회적 대화 - 사회협약 | (2) 유연 근무 - 재택, 단축근무 |
| (3) 유급휴가 및 상병·질병휴가 | (4) 보육돌봄휴가 |
| (5) 다양한 조치 - 자영업자 등 | (6) 안전조치 |
| (7) 해고 및 정리해고 문제 | |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프랑스
대상	모든 업종과 기업	단시간, 파견노동자 포함 미니잡 미해당	경영위기 기업	모든 노동자
방식	임금 80% 지원 최대 9주간의 단시간 근무	최대 12개월 (세후임금 60%~67% 사이) 지원	임금 25% 지급 경우 나머지 임금 75% (최대)까지 지원	총 임금의 84% (일반 예산), 최저임금자 100%

자료 : 이병희(2020), 황수욱(2020) 내용 요약.

* 독일 조업단축급여제도(Kurzarbeitergeld) : 중단기적 경제위기 상황 극복 위해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조업활동 중단하여 노동자 임금감소가 발생 시 임금감소분 보상 제도 (독일 최근 즉시지원금 진행 : 자영업자)

- 2020년 5월 기준 코로나19 시기 해외 주요 국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로 경제적 지원(공적투여)과 고용일자리(실업 등) 분야가 대부분임. 다만 해외 주요 국가 중 코로나19 대응 방안 중 캐나다와 프랑스 지원정책이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음.

(1) 캐나다 주요 지원정책 사례

- 캐나다 정부는 정부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시기 경제 대응 계획>이라는 대분류 카테고리를 제공, ‘청년, 고등교육 및 최근 졸업자(Youth, post-secondary students and recent graduates)’를 분류하여 여타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있음.
- 대표적인 소득지원정책으로는 ‘캐나다 긴급가계지원책(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1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
 - (2)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근로가 중단된 자 또는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 자 또는 실업수당을 수령하고 있으나 2019.12.29.부터 2020.10.3. 사이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된자;
 - (3) 2019년 종합소득이 5천 캐나다 달러 이상(약 437만 원) 또는 신청일자에서 최근 12개월 동안 종합소득이 5천 캐나다 달러 이상인자;
 - (4) 자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지 않은 자
- 한편 ‘청년, 고등교육생 및 최근 졸업생’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 긴급학생지원수당(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CESB); △ 기타 학생 대상 지원;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Canada Student Loans); △ 새로운 일자리 및 기회 창출: 청년 고용 및 숙련전략(Youth Employment and Skills Strategy(YESS program)); △ 학생 서머잡(Canada Summer Job) 임시 유연 정책 확대 등.

[표5] 캐나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청년 특화 정책

사업명	주요 내용
긴급학생지원수당 (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C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대학(원) 재학생 ▲2020.9월 입학 예정인 신입생 ▲2019.12월 졸업한 취업준비생 ▲근로 소득이 월 1,000 캐불 이하이며 코로나19로 근로 시간이 단축된 학생 - (금액) ▲(기본) 월 1,250 캐불 ▲(가산) 부양가족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월 1,750 캐불 - (기간) 2020.5월~8월까지 - (예산) 90억 캐불 - (신청) 입법 절차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 예정
기타 학생 대상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anada Student Service Grant (신규 프로그램, 4.22일 공개) - (내용) 하계 방학 기간 중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관련 사회봉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 최대 5,000 캐불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 2. Canada Student Grants - (내용) 2020~2021년 대학(원)생 학비 보조금 지급액 두배로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 최대 (풀타임) 6,000* 캐불 (파트타임) 3,600 캐불 * 변경 전: 3,000** 캐불 3. Canada Student Loans Program - (내용) 2020~2021년 대학(원)생 주 단위로 지급되는 학비 대출 금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 최대 주 350 캐불로 확대 (변경前 : 주 210 캐불) 4. 원주민 고등교육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2020~2021년 원주민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예산 확대 - (예산) 7.52천만 캐불 5. Federal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 and Postdoctoral Fellowships - (내용) 대학원(graduate, postdoctoral)생 연구 프로그램 보조금 예산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2.91억 캐불 * 상기 학생 지원책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연방정부가 추가로 공개 예정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Canada Student Lo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학자금 대출(Canada Student Loans 및 Canada Apprentice Loans) 보유자 약 1백만명 - (목적) 2020.9.30.일로 대출 상환 기한 무이자 유예 - (신청) 별도 신청절차 없이 2020.3.30.일부로 자동 유예 (4월초 시행)
청년 고용 및 숙련전략 프로그램 (Youth Employment and Skills Strategy, Y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졸업자, 청년 이민자소수자장애인·한부모가정·저소득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및 숙련 프로그램
캐나다 학생 서머잡 임시 유연 정책 (Temporary flexibilities for Canada Summer Jobs(CSJ)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J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학생 서머잡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임. (1) 파트타임고용(part-time emplo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래 CSJ 지원은 풀타임 정규직에게만 해당되었지만 코로나 대응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일자리 지원도 포함 (2) 임금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래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의 50% 정도만 지급되었으나, 100% 지급으로 확대

○ 캐나다 각 주(province) 다양한 노동자 위한 코로나19 대응 정책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모색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표6] 캐나다 각 주(province)별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대응 정책

주(province)	사업명	주요 내용
온타리오	고용의료보험료(EHT) 면제액 증액 (100만불)	- (대상) 고용의료보험료 (Employment Health Tax, EHT) 납부 고용주 - (내용) 고용의료보험료 면제액을 49만 캐불에서 100만 캐불로 증액(민간 분야 고용주 중 90%이상 세금 면제 효과)
	(간접지원) 산재보험료 유예: 19억 캐나다 달러	- 산업재해보험공단(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WSIB)이 고용주의 산재보험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 가능하도록 조치(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시행)
	자녀 양육 수당	- (대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 (내용) 200달러 1회 지급(특수 아동을 둔 경우 250달러)
퀘벡	기업 위기대응 교육훈련 지원 (PACME COVID-19)	- (대상) 퀘벡 내 기업 (자영업자 포함) - (내용) 인사 (Human Resources), 위기대응, 조직관리 분야 컨설팅 및 세미나 등 교육훈련 비용 지원
	노동자 지원 (PATT COVID-19)	- (대상) ① 고용주에 의해 임금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② 연방 고용보험 또는 민간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 (내용) 1주일 최대 573캐불까지 지원 (최대4주)
브리티시컬럼비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Student Aid BC)	- (대상) BC주정부 학자금 대출자(Student Aid BC) - (내용) 2020.9.30로 대출 상환 기한 무이자 유예
	BC주 노동자 긴급지원 (BC Emergency Benefit for Workers)	- (대상) 연방 EI 또는 CERB를 수령하는 BC주 근로자로, ① 해고(laid-off), 아프거나(sick), 격리(quarantined)된 사람 ② 아이 또는 부모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돌봐야 하는 사람 ③ 데이케어·학교가 문을 닫아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 ④ '20.3.15부터 BC주 주민이며, 15세 이상인 사람 ⑤ '19년 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인 ⑥ 주정부에서 기타 소득 보조금 또는 장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람 - (내용) 1,000불(1회 지원) - (신청) 5.4부터 가능
	BC주 임시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 (BC Temporary Rental Supplement Program)	- (대상) 코로나-19로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EI/CERB 신청이 가능한 사람), 소득이 25%이상 줄어든 사람, 현재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하는 사람 (증빙자료 요구) - (내용) 최대 500불 임대주에게 송금
	온타리오주 학자금 대출(OSAP) 상환 유예	- (대상) 온타리오주학자금대출(Ontario Student Assistant Program) 대상자 - (내용) 2020.3.30.-9.30.간 학자금 대출액 및 이자 상환 유예 - (신청) 모든 기존 대출자 적용, 별도 신청 없음
앨버타	관광업계 지원 (Tourism Levy)	- (대상) 호텔 포함한 숙박업자(28일 이상 숙박하는 장기투숙, 4개 미만 객실 보유 숙박업은 비포함) - (내용) '20.8.31까지 관광 부담금 지불 유예
마니토바	하계 학생 일자리 지원책	- (대상) 개인 사업체,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15세-29세 - (내용) 05.01부터 09.01 까지 하계

		방학 기간 동안 학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주들에게 지급되는 주정부 지원책. 시간당 \$7 지원되며 1명당 최대 \$3000까지 지원가능. 한 고용주 최대 5명까지 고용 가능
뉴브런즈윅	실업자 지원 (Emergency Support Benefit)	-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자영업자 * 캐 연방 지원을 받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 보전 - (내용) 900캐불 일시불 지급
	양육 수당 지원	-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 (내용) 보육비(child-care fees) 면제 - (신청) 州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지원 구제 조건 확인 가능
프린스에드 워드아일랜드	노동자/자영업자 지원 (Support for Businesses and Employees)	-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 (내용) △주정부 대출(Finance PEI, PEI Century Fund 등) 3개월간 대출 상환유예, △중소기업진흥공사(Community 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를 통한 450만캐불 추가 지원, △(노동자)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 주200캐불 임시 지원
	자영업자 대상 긴급 소득보조 (Emergency Income Relief for the Self-employed)	- (대상) 여타 소득보조 혜택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 (내용) 3.16-29간, 최대 주 500캐불 소득보조 * 혜택기간 연장 가능 - (신청)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① 납세증명서, ② 사업이 주 소득원이라는 증명자료, ③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증거자료 제출 필요

(2) 프랑스 지원정책 사례

○ 쇼마주 파르티엘(임시 실업) 제도

- 프랑스는 사업장 폐쇄 등으로 노동자들이 일하지 못하는 동안 기존 급여의 80~100%를 보전해줌. 고용주가 주정부에 직접 신청한 뒤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주정부가 고용주에게 상환하는 방식이며, 임시 실업 기간이 끝나면 노동자들은 대부분 재고용됨.

[표7] 코로나19 관련 프랑스 정부의 긴급지원 정책 내용(2020.3.19.)

<p>1. 사회보장분담금, 직접세 등 조세 납부기한 연기 (325억 유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 및 자영업자(수공업, 상공업자, 프리랜서) 대상 사회보장 분담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의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 기업의 법인세, 고용관련 세에 대한 납부 기한 연기 <p>2. 직접세 납부가 어려운 기업에 대한 개별 검토 통해 감면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밀린 조세의 할부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해당 계획을 통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직접세 감면 지원 (예: 소득세, 지역경제분담금 등) <p>3. 소규모 사업자 대상 수도, 가스, 전기요금 및 임대료 납부 연기</p> <p>4. 경영 어려움에 직면한 소규모 사업자 등 대상 지원금 지급 (총 12억 유로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사업자, 자영업자 등에게 1,500유로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들 중 심각한 경영 애로에 직면한 사업자에게는 개별 검토 후 추가 지원 - 노동자 10인 이하, 연매출 100만 유로 미만 관광, 문화 등 관련 분야 소규모 사업자로서 정부 조치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우 또는 '19.3월 대비 '20.3월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한 경우

- 5. 자금이 필요한 기업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 은행 대출 보증 지원
- 6. 기업과 은행간 중재 지원
 - 금융기관 상대로 발생한 기업의 애로에 대해 105명의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 조정관이 중재자 참여하여 해소
- 7. 노동자 고용유지 위해 부분실업제도 통한 인건비 지원 (85억유로)
 -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노동자의 노동 활동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 세전 임금 기준 70% (세후 임금의 84%) 수준으로 보상 (단,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100% 지급)
 - 고용주는 세전 임금 기준 월 6,977유로(SMIC의 4.5배)를 상한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액의 100%를 정부로부터 환급받음
- 8. 거래 기업간 분쟁 발생시 중재 지원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거래, 계약이행 차질 등으로 분쟁상황에 있는 기업 대상 민법상 계약, 공공기관의 명령 등과 관련한 모든 분쟁에 대해 무료로 중재 지원 (예 : 납품대금 지연 등)
- 9. 코로나19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정부조달 계약이행 지연시 벌금 면제
- 10. 기타 경제 및 사회적 지원
 - 사회보장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재검토 없이 기존 혜택 연장
 - 영업축소 또는 폐쇄에 따른 장애노동자 임금 지원
 - Treve hivernale(동계기간 집세를 못내도 강제조치 못하는 제도) 2개월 연장
 - 질병 휴직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전 기간중지, 고용주지급 일일보상금 적용분야 확대

○ 프랑스 정부는 각 사업 분야별 접근 사례

가. 문화예술 분야

- 프랑스 문화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타격을 받은 문화예술 분야에 22백만 유로(음악 10백만 , 공연 5백만, 인쇄/출판 5백만, 미술 2백만 유로)를 '긴급지원' 하기로 결정(3.18)
-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된 행사의 지원금 보존
- 예술인 실업급여제에 있어 단기계약직 예술인이 연간 총당해야하는 노동 시간(507시간)에서 전체 격리기간을 제외하고 전체 시간을 산정하기로 함.
- 프랑스 의료보험공단은 3월달 분담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작가-예술가들 대상 익월 청구금액에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
- (인쇄/출판) 국립도서센터는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된 행사의 지원금(행사에 참여하는 작가에 대한 사례비)은 예정대로 집행. 또한, 서점과 출판사의 대출금 지급 마감일을 연기함.
- (미술) 갤러리, 라벨을 부여받은 예술센터, 예술가들을 지원할 예정임. 국립조형예술센터는 갤러리 지원 방법을 완화할 예정.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된 박람회의 지원금은 예정대로 교부.

나.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영화 및 미디어 포함) 분야

- (영화) 국립영화센터는 공연과 극장의 티켓수입세 지급 마감일을 연기함.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된 행사의 지원금은 예정대로 교부.
- (음악) 국립음악센터는 가장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프로페셔널들에게 지원금을 배정할 예정. 또한, 공연 티켓 수입세 지급 마감일 연기
- (공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과 고용에 지원금이 쓰일 예정임. 정부 라벨(국고지원을 받으며 인증받은)을 받거나 지원금을 받는 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 지자체와 협의 예정

다. 관광 분야

- 프랑스 관광청은 재경부를 비롯, 큰 피해를 입은 파리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산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고 이하 내용을 지원하기로 함:
 - ▲피해 사업체 감세 및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은행 대출 지원 및 정부 보증 시스템 지원, ▲행사 취소 관련 보험처리 등의 행정절차 지원, ▲피해 사업체 인력비 일부 지원 ▲소비자 및 납품업체 등과의 분쟁 조정 지원, ▲온/오프라인 핫라인 개설을 통한 사업체의 지원 관련 문의 및 신청 절차 간소화
- 정부는 또한 관광 분야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3.26일자)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관련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추가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
-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취소된 경우(2020.3.1.~9.15. 기간 중), 관광 분야 기업 혹은 종사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전액 환불하는 것이 아닌, 18개월간 유효한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기존 관광사업 등록증 갱신 및 특정 관광라벨(포도원 등) 갱신 신청 기간 연장. 숙박업체 등이 임시 혹은 무기한 휴업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 중 관광사업 등록증 말소 금지

라. 체육 분야

- 프랑스 내 아마추어, 프로 스포츠 행사 또한 전면 취소된 상황으로 록사나 마라시네아누(Roxana Maracineanu) 프랑스 체육부 장관은 정확한 손실 및 피해액 파악에 주력 하고 있음.
- ※ 프랑스 축구연맹은 리그1 경기 1회가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전체 손해 비용이 2천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 또한, 각 분야별 프로 경기 1회 취소에 드는 손해 비용은 ▲농구 경기 7만 유로, ▲ 핸드볼 경기 10만 유로 ▲ 럭비 경기 30~8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

- ※ 프랑스 내 체육 분야는 44만8000여개 일자리, 11만2000 사업체, 36만개 협회(전체 프랑스 내 협회의 24%에 해당), 연간 777억유로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집계
- 체육 분야 지원 위한 세부 방안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으나, 3.19일자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 지원 정책 내용을 큰 부분 따를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코로나 19 이후 경제사회 및 노동환경 변화

가. 고용일자리 및 사회 안전망 문제

- 한국은 2020년 3월과 4월 국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대폭 증가(신규 15만명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3만6천명)했음. 반면, 신규 취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 일자리가 증가했음(좋은 일자리 감소, 나쁜 일자리 증가). 2020년 4월 20일 기준 고용안정유지조치에 따른 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코로나19 이후 8만7천개 사업장에, 종사자 규모는 85만9천명이나 되었음.

고용유지 지원금	3월말 기준		4월 20일 기준		계(3월+4월)	
	사업장 수	신청 인원	사업장 수	신청 인원	사업장 수	신청 인원
전국	35,126	330,211	52,453	529,108	87,579	859,319
서울	9,474	103,102	13,629	154,485	23,103	257,587

*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재구성(신청인원은 연 인원은 추출시점 따라 사업장수 및 신청인원 달라질 수 있음)

- 문제는 2020년 하반기 전망이 더욱 어둡다는 상황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제시되고 있고, 2/4분기 이후 실직자는 증가하고 있음. [그림2]는 전국 고용보험 순수취득자 및 순수상실자 수이며, 전국 고용보험 순수취득자는 2019년 3월(798,744명)과 2020년 3월(690,920명) 사이 약 107,824명 감소했음. 전국 고용보험 순수상실자는 2019년 3월(702,140명)에서 2020년 3월(726,330명)사이 약 24,190명 증가한 것으로 보임.

[그림 2] 한국 순수취득자 수 및 순수상실자 수 추이(2019.3~2020.3, 단위: 명)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피보험자현황 재구성)

[표7] 한국 실업급여 신청자 현황 추이(2019.10~2020.3, 단위: 명, %)

	2019년 10월	2019년 11월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2월	2020년 3월	증감
합계	82,907	86,541	95,669	174,166	107,562	155,902	72,995
20세 미만	171	191	183	399	267	338	167
20-29세	14,449	15,672	15,667	24,922	18,462	28,480	14,031
30-39세	16,733	17,551	17,084	25,270	18,984	31,228	14,495
40-49세	17,225	17,291	18,750	29,406	20,317	36,460	19,235
50-59세	19,305	20,400	24,508	40,608	26,992	35,390	16,085
60-69세	14,664	15,100	19,154	51,803	21,873	23,277	8,613
70세 이상	360	336	323	1,656	562	599	239
분류불능	0	0	0	102	105	130	13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신청자건수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주 : '19년 10월 1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되어, 기존 구직급여 통계와 전년동월대비 시계열 비교 시 유의 필요

나. 코로나19 이후 상황 - 노동생활 세계의 변화?

- 향후 자본과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조직 재구조화(조직 지배구조, 관리운영, 유연근무, 통제 방식, 노동시간, 임금체계, 작업방식 등)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준비해야할 과제도 확인되고 있음.
- **첫째**, 노동자들의 작업과정과 근무형태 등 노동시간 관련 전반적인 재구조화와 모색(근기법 개정 : 노동시간과 휴일휴가, 유급병가 등)이 필요할 것 같음. 노동시장에서 보면 현재의 일하는 근무형태(출근일, 교대제, 노동시간)는 가장 새롭게 논의될 개연성이 높고, 코로나19 이후 1주일 평균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주5일)은 변화될 개연성이 높음. 이미 5년 전부터 독

일은 소위 '4차 산업'(디지털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4.0' 모델로 주 25시간~32시간 전후의 라이트 풀타임(light full-time)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

- 포스트 코로나 시기 '적정 노동시간'은 무엇인가?의 개념이 재정립될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차원적인 차원에서 노동시간 논의가 새롭게 논의될 개연성이 있음. 반면 한국 사회는 아직도 장시간 노동체제(주 상한 52시간제)에 과로사(주 60시간 이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과감함 노동시간 정책이 새롭게 모색될 시기임. 한편 2019년부터 영국에서 '최소 생활노동시간'(living hours)이 운동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적정 임금'과 '사회보험 적용'이 전제 조건으로 되는 것임.

* 영국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 2019년 6월부터 고용주에게 '최소 4주 전 근무(shifts) 공지' 및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생활노동시간(Living Hours) 캠페인 진행⁴⁾

○ **둘째**, 코로나19 이후 시기에는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영역이 새롭게 규정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조(정의) 항목에 '고용·노동'으로 인한 항목을 추가해야 함. 또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질병 및 감염으로 인한 고용 및 노

4) BBC(2019.6.12), "Firms face pressure to improve zero-hours contracts", <https://www.bbc.co.uk/news/business-48593588>

등문제를 추가해야 함(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포함). 과거 작업장 내 공간과 인력 적정 문제 등은 일부를 제외하고 크게 신경 쓰지 못했기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향후 중요 정책 사안으로 판단 됨.⁵⁾

〈예시〉 코로나19의 경험 - 콜센터 작업공간 정책 대응 과제

1. 단기과제 - 작업 공간 재배치

가. 근무형태 운영변경 - ‘일하는 방식 사회적 거리두기’

- * 출근 일 변경 → 상담사 출근 순번제(홀짝), 하루 인력 과밀 해소
- * 근무시간 변경 → 상담사 시차 출근제 운영, 시간대별 과밀 해소

나. 공간형태 배치변경 - ‘일터 내 공간적 거리두기’

- * 상담 좌석 재배치 → 한 칸 건너, 교차 배열 상담사 배치

[현재 방식] 상담 작업공간 - 좌석배치 구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개선 방식] 상담 작업공간 거리두기 배치구조

1번		3번		5번		7번		9번	
	12번		14번		16번		18번		20번

[고려사항] 1. 인력과 서비스 문제, 콜 업무량, 서비스 수요, 인건비(출근 일, 임금 보전) 등
 2. 외주하청, 파견업체 자율성 부족(원청 업체 동의 필요 ⇨ 계약조항 등)

*총별 포트폴리오 : 다층, 여러 방 운영 시 → 1개 층 폐쇄 시 다른 층 사용 가능 검토

다. (유급)연차휴가, 특별휴가

- * 코로나19 긴급 시기 3월 연차휴가 활용(인력추가) 인력 분산, 집단 감염 전파 최소화

라. 상담 인력 추가 지원 통한 최소적정 인력 편성 운영

- ① 근무형태(shift) 변경
 - : 오전/주간/저녁/야간 등 구간 세분화 → 기존 시간대 넓게 배치, 최소 인력 운영
 - : 채택 가능 상담 업무 수요 파악(노트북 대여, 프로그램 등) 전환 검토
- ② 운영 및 휴게시간 변경
 - : 환기 횟수 시간대별 증가, 상담사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구간 확대(밀접 최소화)

마. 콜센터 계약 및 운영 주체별 성과 및 업무 평가

- ① 콜센터 업무성과 한시적 자율 부여
 - : 콜센터 콜량, 응대 수, 업무성과 평가 유예, 고객 모니터링 유예
 - ↳ 해피 콜, 콜백 서비스 한시적 제한(고객만족 확인) → 인-비운드 콜 중심 운영
- ② 외주협력업체와 원청 공동 대응 모색
 - : 출입구 열감지기, 이상 징후 조기 신고, 상담 개인 비품·물품 지급 및 방역·소독 일상화

5) 코로나19 이전에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혹은 IT 기업들이 작업공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이상적 모델(?)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음.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작업장 내 위생과 방역 문제가 제시되면서 공유경제·공간 문제는 역설적으로 다시금 검토하게 되었음. 실제로 에어앤비(숙박공유)나 우버(차량 공유) 같은 사업은 2020년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이 논의되고 있음.

⇒ 헤드셋, 전화기, 책상, 컴퓨터·키보드 등 소독제 가능 알콜·숨 지급

바. 인구학적 특성 : 임신 여성 상담사 등 개인별 특성 고려 검토 必

2. 중기과제 - 최적 공간, 인력 재배치 (중앙 정부 제도화 과제)

가. 최적 공간 검토

- * 기존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 → 특정 업종, 직업군 한정 최소 면적 기준 존재
- * 콜센터 등 과밀 업무 근무 면적 → 기후환경, 보건의료 상황 기준 면적 필요(현재 無)

나. 최적 인력 검토

- * 기존 인력 배치 →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서 등 주요 국가 자격 소지 업무 사례
- * 콜센터 상담 인력 → 코로나19 '서울 콜센터' 반면교사 최소 적정 인력 검토

- 이미 우리는 코로나19 시기 국내 콜센터와 쿠팡 물류센터의 '작업공간'(질집, 밀폐, 비품 공용 등)과 고용구조(비정규직 다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층만을 찾아간 바이러스의 영리함(약한 고리)까지 확인케 했음. 저비용-아웃소싱의 이윤경제 논리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는 그간 논의 외의 사안이었으나, 이번 코로나19 이후 중요 의제로 부각된 것임.



* 주 :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는 3,680명 중 관리직 약 90명을 제외한 직원은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일용)으로 고용되어 있음.

○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노동시장 통제와 감시, 사생활 문제가 더욱 쟁점(정보통신기기 관련 법률, 모바일-온라인 취업규칙, 단협 등)이 될 수 있기에 법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함. 노동자의 작업 비품에 필요한 것을 기업과 사용자 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 19 이후 재택근무/온라인 노동 자율근무 형태는 기업이 투입 대비 산출(ratios of output to

input)의 실질적 통제가 어려운 문제 발생하게 됨.⁶⁾ 한편 재택근무 통한 화상 근무 회의는 공적-사적 공간을 희석화하며, 개인 사생활 침해와 삶의 공간(주거) 노출 문제, 화상회의 (zoom, 구글 Meet) 웹 카메라 소리 감지 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이 상존함.⁷⁾

- 특히, 재택근무 형태는 모바일 프로그램의 출퇴근 시간 및 업무 입력 실시간 입력 등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가 예견됨. 결국 안정적인 호봉제 성격의 임금체제는 변경될 개연성이 높고, 성과평가가 용이한 성과연봉제 도입(네이버/넥슨 등)이 확대될 것이고, 이는 개인간-팀간 경쟁을 통해 정규직 고용의 무의미화가 강화될 것임. 개인 차원에서 보면 업무 평가 및 인사승진 등 디지털 스트레스·트라우마(슬로우 패러독스 : “나는 어디에서나 컴퓨터를 본다. 단, 오직 생산성 통계를 제외하고 말이다”)도 나타날 것임.

코로나 19 이후 일터 변화

<재택근무 통한 화상 회의 ?>

- ✓ 업무 기자제, 비좁은 누가 제공..
ex) 노트북
- ✓ 공적-사적 공간 희석화, 개인 사생활 침해와 삶의 공간(주거) 노출,
- ✓ 화상회의 (zoom, 구글 Meet) 웹 카메라 소리 감지 문제

슬로우 패러독스 “나는 어디에서나 컴퓨터를 본다. 단, 오직 생산성 통계를 제외하고 말이다”

경향신문
떠다니는 내 전화번호·교사들은 두렵다
구글링 기자 | 입력 2020.05.14. 23:31 | 댓글 8개



학부모·학생에 개인정보 노출
프로필 사진 악용 등 범죄 우려
24시간 카톡에 사생활 침해도
유선전화 연동·투넘버 '대안'

*주요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흥중학교에서
표시하자 선생님이 머리 위로 키트를 만들어 보

- 넷째, 일하는 공간의 노동 형태는 기술발전과 업무 형태(비대면, 언택트)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차별문제에 대응(디지털 차별금지, 디지털 공정채용) 해야 함. 디지털 경제와 기술발전은 노동시장에 직원 채용 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국 아마존 사례) 코로나19 시기에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었지만, 새로운 기술과 프로그램(AI)을 통한 기존 신규 채용·입사자의 이력서 분석을 시알고리즘 통해 최적 후보 선정하는 방식은 인간편향(Human Bias) 제거하기 위함이지만 역설적으로, 여성을 자연스럽게 배제시킬 수 있음.⁸⁾

6) 이는 새로운 통제(IT, 모바일) 전략 모색(미국 월마트 : 매장 내 모든 소리 감지 시스템 listening to the frontend → 고객과 직원 소리만이 아니라, 내용 인지 해석)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7)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은 이제 SNS, Zoom 등 활용 통한 업무로 인해, 디지털 성희롱·폭력 등의 형태(화상회의 직원 모습/화장/옷차림/가구 등 화면 촬영이나 캡처, 딥 페이크물 등)로 변화될 것임.
8) 2019년 하반기 국내 주요 기업(LG유플러스, 빙그레, LS전선, 교보증권, 인터파크, 신한금융투자, BGF리테일 등) 서류전형 온라인 진행, 2020년 상반기 국내 주요 기업(라인 플러스, 이스트소프트, 뱅크샐러드, 우아한형제, SK이노베이션, LG 전자, 삼성그룹, 포스코 그룹 등) 온라인 시험·화상면접 등 진행하고 있음.

코로나 19 이후 일터 변화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차별문제>

AI 신규 채용(입사자) 이력서 분석 →
 알고리즘 최적 후보 선정 → 인간편향
 (Human Bias) 제거 ? 역설적으로 여
 성 자연스럽게 배제
 ‘블랙박스’(black Box) 취급 → 책임소재 탈
 피 전략(AI 책임) → ‘차별금지법’과 같은 노
 동법적 제약 우회 수단 활용



-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개발자/알고리즘 학습 바탕/데이터 입력자 다수가 남성(인권, 노동, 젠더 감수성 결여된)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됨. 자본과 기업 채용과정에서 성별이나 학력 등의 차별 문제의 책임소재를 탈피하는 전략(AI 책임: ‘블랙박스’(black Box) 취급)은 결국 ‘차별금지법’과 같은 노동법적 제약 우회 수단 활용될 우려가 높음.

비대면 언택트, AI 해석과 판단1

- ✓ 비유적, 추상적 표현 지양하고, 구체적인 경험 제시하기..!
- ✓ 지원자와 기업의 적합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 ✓ 단점을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되, 극복하기 위해 실천한 노력을 이야기 하기

비대면 언택트, AI 해석과 판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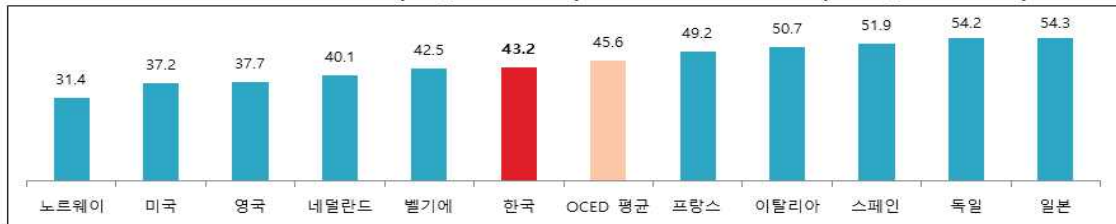
- ✓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팀 전체가 야근을 해야 한다면..?
- ✓ 성과 1위를 달성한 직원에게만 인센티브를 준다면..?
- ✓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 다섯째, 현재 국가의 디지털 일자리 확대는 자본과 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고, 이는 오히려 사기업의 공적투자만 진행되고 일자리는 기계로 대체(자동화, 키오스크, AI : kb은행 ‘디지털 지점’, CGV ‘디지털 극장’ 등 가속화 확대)되는 문제점도 공존하기에 노동자 ‘교육훈련’과 ‘숙련형성’ 등을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함.

- OECD 회원국 기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비율은 한국이 43.2%(OECD 평균 45.6%) 정도였으나, 비정규직(54.9%)이나 고령자(33.9%)의 경우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의 비율이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었음. 이와 같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급교육훈련과 평생교육 등 노동자 숙련형성 투자가 정부와 기업이 병행하도록 해야 함.

산업과 기술발전문제 **디지털 자동화**

✓ 노동시장 일자리 대체 비율 43.2% (고위험군 10.4%) → OECD 평균 45.6% (중대위험군 32.8%)



자료 : OECD 2019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19)

✓ 노동시장 비정규직, 고령자 교육훈련&숙련형성 기제 미비 60%-76% 사각지대

비정규직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개인적으로 바빠서	너무 비싸서	고용주 지원 부족해서	합계
한국	53.94	6.70	13.54	2.04	76.26
OECD	27.33	11.44	20.37	8.39	67.53
고령자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개인적으로 바빠서	너무 비싸서	고용주 지원 부족해서	합계
한국	33.97	11.58	12.01	2.38	59.94
OECD	18.80	15.60	13.06	3.87	51.38

Ⅲ.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 문제

- 고용관계 다변화 대응, 사회안전망 모색

□ 노동시장 환경과 고용관계 변화, 새로운 정책 모색

- 노동시장은 계약 및 고용관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20년 사이 세계화, 산업구조 변화, 기업의 경영전략 등에 의해 전통적 표준화된 고용계약(standard employer contract, SEC)과 고용관계(standard employer relationships, SER)를 벗어난 비표준적인 계약과 고용방식이 확산하고 있음.
- 노동시장에서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의 확대는 ‘제도적 배제’와 ‘차별’을 동시에 야기하는 문제가 지적하고 있음. 특히 파견노동(Agency)이나 영시간 계약(Zero hours)부터, 종속적 자영자(Dependent Self-Employed),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와 같은 고용관계 문

제가 발생하는 문제임.

- 국내 노동시장은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36.6%)이 높고, 특수고용 노동자(221만명), 플랫폼노동자(53만명 추정), 1인 자영업자(403만명) 비중의 증가임.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으나, 문제는 비임금노동자의 증가 현상임. 2018년 기준 1인 자영업자 비중은 70.9%로 고용주(29.1%)의 2.5배 정도 되는 상황임(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8.8).

[그림3] 한국 고용구조 및 고용형태 및 규모 추정(2018)



* 주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8년 8월)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는 245만명(전체 노동자의 12.3%) 중 비정규직 비율 13.4%였음. 고용노동부 2018년 3월 고용형태공시제 300인 이상 대기업 3,475개소 노동자는 487만명이며, 비정규직 비율은 39.8%(194만명 → 직접고용 103만명 간접고용 91만명)였음.
 *자료 : 1) 임금노동자, 1인 자영업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년 원자료 분석
 2) 특수고용(정흥준 외, 2019), 플랫폼노동(김준영 외, 2019)의 2018년 원자료 재인용

- 2018년 2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비정형 노동자들까지 포괄하는 사회보호와 사회보장 촉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비정형 고용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괄하기 위하여 제도간 연계 강화, 고용형태간 사회보장 수급자격의 이동성, 디지털 경제 노동자의 사회보장 등을 제안함.

변경 이전 (ICSE-93 분류)		변경 이후 (ICSE-18 분류)	
임금노동자 (employee)	자영자 (self-employee)	종속적 노동자 (dependent work)	독립적 노동자 (independent work)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임시·단기 노동자 -유급연습·훈련생, 인턴	-고용주(고용원 있음) -자영자(고용원 없음) -무급가족종사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임시·단기 노동자 -유급연습·훈련생, 인턴 -종속적 계약자 -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고용원 있음) -자영자(고용원 없음)

자료 : ILO(2017, 2018), Data collection guidelines for ICSE-18, ILO.

-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노동통계학술대회(ICLS, 2018.10)에서 ‘2018 국제종사상지위기준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2018, ICSE-18)’을 채택했음. 이는 플랫폼노동과 같은 고용관계를 포착하기 위해 새로운 고용지위분류 방식을 채택한 것 (‘일에서의 지위 분류에서 고용관계 구분’)임.⁹⁾

[표8] 한국 주요 플랫폼노동 및 특수고용,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현황 비교(2018)

· 조사 주제	· 직종/고용형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노동 조사 (2018)	3개 단순 평균	19.1%	35.8%	49.0%
	° 퀵서비스	19.6%	34.0%	48.0%
	° 대리운전	27.5%	53.9%	71.6%
	° 음식배달	10.2%	19.6%	27.5%
통계청 경찰조사 (2018.6)	호출근로	8.1%	0.5%	0.6%
	특수고용	8.2%	6.1%	6.5%
	기간제	40.0%	33.0%	41.9%
	정규직	84.1%	95.4%	98.8%

자료 : 1) 임금노동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2018.8) 분석
2) 플랫폼노동자 '한국고용정보원 실태조사(2018) 재구성

- **고용관계 다변화**는 기존의 다양한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발생. 특히 2020년 코로나19 문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일자리 상실/소득 단절 등으로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 등), 불안정노동(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과 1인 자영업자의 실업문제가 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9) 국제노동기구(ILO)의 ‘2018 국제종사상지위기준(ICSE-18)’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로 분류되었던 기존의 분류 기준에 종속적 계약자 항목을 추가한 것임. 이는 종사상지위를 ① 고용주(Employers), ② 고용인 없는 독립노동자(Independent workers without employees), ③ 종속적 노동자(Dependent worker), ④ 고용인(Employees), ⑤ 무급가족종사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의 5개 항목으로 분류한 것으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중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웠던 기존 플랫폼노동자와 같은 종속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s)를 파악하기 위함임.

□ **사회보장제도의 설계와 한계** **공적부조, 사회보험**

○ 사회보장제 미흡한 곳과 안정적인 곳의 코로나19 일상생활과 인식 차이



○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는 (1)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와 (2)사회보험(social insurance)으로 구분. 고용보험은 ▲사업장(직장) 가입(근로기준법 : 노동자/당연)과 ▲지역 가입(자영업자/임의)으로 구분. 특히 코로나19 감염 문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일자리 상실/소득 단절 등으로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 등), 불안정노동과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고용보험 미가입자 13.8%, 적용제외 대상 31.4%)

-「고용보험법」제정(1995) 이래, 사회보험 형태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했고, 고용보험 시행 25년 가까이 지난 현재 고용보험은 (1)고용안정 사업(실업급여&구직급여, 상병수당 등), (2)직업능력개발사업(교육훈련 등), (3)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2001년) 3가지 영역(계정)으로 구분됨.

○ 고용보험료는 노사 각 50% 부담(기여)이며, 지역 가입은 100% 자부담 형태인데, 노사 부담률 1.6%(노 0.8%, 사 0.8%)로, OECD 국가 평균 수준(2%~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다만, 복지제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사회보험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국고보조)하는 형태가 일부 있음.

△실업크레딧, △두루누리 사업장 보험료지원 (소규모 사업장 지원)

△기타(농어민해당 보험료지원,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표9] OECD 주요 회원국 실업보험 및 실업부조 수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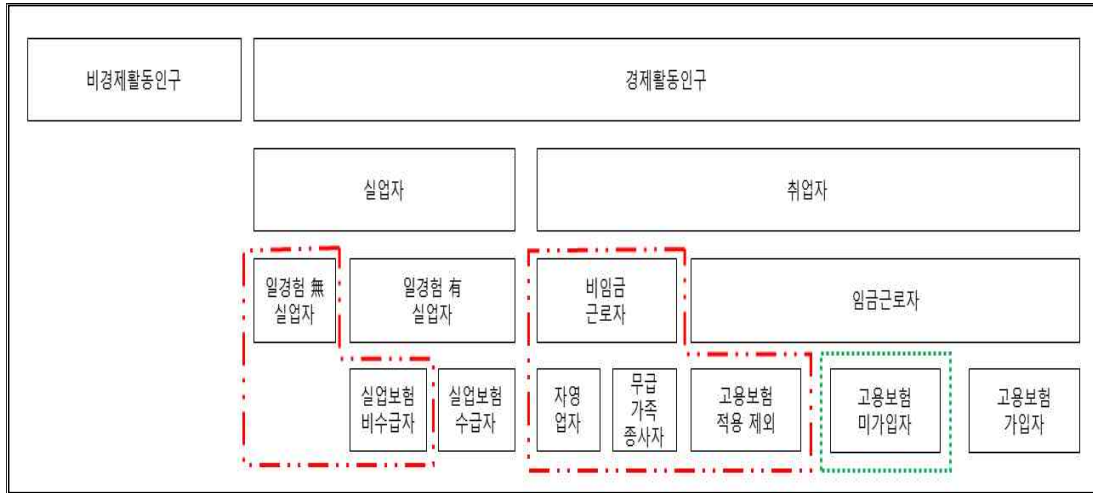
구분	수혜율			구분	수혜율		
	실업보험 (A)	실업부조 (B)	A+B		실업보험 (A)	실업부조 (B)	A+B
터키	1.9	0	1.9	스페인	17	27.8	44.9
슬로바키아	13.1	0	13.1	체코	46.3	0	46.3
루마니아	15.8	0	15.8	뉴질랜드	0	47.7	47.7
폴란드	17.6	0	17.6	에스토니아	31.2	16.6	47.8
일본	19.3	0	19.3	이탈리아	48.3	0	48.3
키프로스	25.7	0	25.7	덴마크	43.7	12.1	55.8
헝가리	17.7	9	26.7	노르웨이	57.3	0	57.3
몰타	5.8	22.3	28.1	미국	5	52.4	57.4
미국	29.2	0	29.2	스웨덴	59.8	0	59.8
슬로베니아	29.9	0	29.9	스위스	62.7	0	62.7
불가리아	35.5	0	35.5	네덜란드	70.2	0	70.2
칠레	36.2	0	36.2	벨기에	99.8	0	99.8
한국	37.1	0	37.1	호주	0	100	100
리투아니아	38.1	0	38.1	프랑스	91	16.4	107.4
룩셈부르크	39	0	39.0	오스트리아	54.1	61.9	115.9
이스라엘	40.1	0	40.1	아일랜드	17.8	103.4	121.2
포르투갈	31.8	8.7	40.4	핀란드	87.1	86.4	173.4
라트비아	41	0	41	독일	48	184.5	232.6
캐나다	42.3	0	42.3				

* 자료 : OECD(2018), 「OECD Employment Outlook」, OECD(2016년 기준 통계)

- 실업급여제도는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 노동자’(비정규직 : 1주 15시간, 주 60시간 미만 제외)를 전제로 설계(비자발적 퇴사 대상)되었음.¹⁰⁾ 단기 비정규직과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미취업 청년), 자발적 퇴사, 예술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미적용 혹은 배제 되는 한계(미가입, 적용 제외)가 지적되고 있음.
 - 실업급여는 직업훈련, 고용촉진 그리고 실업예방 등의 노동시장의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발생 시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고용보험 급여 중 하나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임.
- ⇒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3)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4)상병급여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를 통해 소정근로시간 미만인 자인 경우에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음.

[그림4] 현재 한국 고용보험법률상 경제활동상태별 실업급여 사각지대



주 : : 제도상 사각지대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65세 이상 근로자 or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or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②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
 ③ 실업급여 미수급 실업자(일경험 無 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실업급여 수령일 초과 실업자)
 ④ 비임금근로자
 : 운영상 사각지대(고용보험 가입 노력자)

- 한국은 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배제가 심각하고, 그나마 경제활동 상태나 고용형태(취업자: 임금노동자/비임금노동자, 미취업자) 여부에 따라 격차도 심한 상태임(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 10명 중 4명(48.4%)에 불과한 실정임(*일시일용직 미가입 약 21%, 특수고용/플랫폼/예술인 등 약 24% 내외).
- 코로나19 시기 가장 피해를 본 취약층(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이나 부문 대상(여성, 청년, 고령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를 고용관계에 기초한 의무와 권리로 규정 아닌, 헌법적 권리(시민권, 헌법 33조 사회구성원, 헌법 10조 행복추구권)로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함. 그나마 고용보험 단기 실업급여 신청자(4개월 이하 1만8천5백명 / 5개월 이하 5만7천명)는 실업급여 이후 일자리가 없을 경우 빈곤 위험에 놓임.

[표10] 코로나19 시기 실업급여 신청자 및 1인당 금액(2020년 4월 20일 기준)

소정 급여일수	신규신청자	1인 평균 총 소정급여액	1인 월 평균 지급예정액
합계	155,193	10,864,207	1,751,569
90일(3개월)	479	5,097,378	1,699,126
120일(4개월)	18,107	6,877,023	1,719,256
150일(5개월)	38,892	8,659,554	1,731,911
180일(6개월)	36,897	10,431,975	1,738,663
210일(7개월)	28,706	12,393,827	1,770,547
240일(8개월)	20,440	14,231,341	1,778,918
270일(9개월)	11,672	16,340,231	1,815,581
합계	155,193	10,864,207	1,751,569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20.4.20)

주 : 3개월~4개월 실업급여 지급자 6월~7월 이후 소득 단절, 구직 활동 시작

○ 코로나19 시기 실업과 소득단절을 막고,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 대응방안(사업유지-고용 유지 비율 측정과 정책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취약층 및 사각지대(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 및 아르바이트, 4인 이하 사업장 비정규직 등)의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되어야 함. 이는 중앙정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사회보험’(10인 미만 사업장 & 215만원 미만 종사자)의 정부 지원 제도 비적용율(20%~30%)도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임.

- 따라서 향후 정책은 고용보험은 소득이 있는 ‘모든(all)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국세청을 통해 소득 파악(월) 및 증빙 등을 맡으면 사회안전망이 촘촘해질 수 있음. 고용보험 분담을 기업과 노동자만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거나, 노사정 3 주체가 분담하는 곳도 있음. 프랑스는 작년부터 노동자 고용보험료(2.4%)를 국가가 맡고 있기도 함.

[표11] 한국 고용보험 적용 문제점(제외/배제)과 개편 대상 논의 모형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	
1그룹 (가입)	2그룹					4-1 그룹 (비임금노동자)	4-2 그룹 (고용주)
	2-1그룹 (임시일용)	2-2그룹 (비정규직 등)	3-1 (고령자)	3-2 그룹 (자발적이직)	3-4 그룹 (특수직역)		
근로 계약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 215만원 저임금노동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 지원대상)					적용 제외	(임의가입)
	미가입	가입누락	미가입	적용제외	적용제외		
주요 대상	초단시간 건설일용	기간제 계약직	65세 이상	자발적 이직·퇴직자	공무원/교원 경찰/교정 소방관/군인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자영업자 지역가입

* 주 : 1) 현재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중 생계 목적 일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 가능.
2) 1인 자영업자 현재 임의 계정 통해 고용보험 가입 가능(높은 고용보험료 문제)

〈기존 실업보험료 기여책임 국가별 다양〉

① 피용자와 고용주가 절반(1/2) 부담 사례 :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한국	③ 피보험자만 부담하는 사례 : 덴마크
② 고용주가 월등히 많이 부담 사례 :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④ 고용주만 부담하는 사례 : 스웨덴, 이태리, 미국

① 적용 대상

: 근로자 여부 아닌, '소득 활동하는 모든 사람'(자영, 특고 포함) 적용

② 보험료 부과기준(피보험자)

: 근로소득 + 사업소득

③ 운영 주체

: 고용보험 징수 공단 아닌, **국세청**에서 주관 변경 논의(소득파악)

④ 기타 자영자 소득 파악

: (중복인원 제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신고 인원 74.8% 파악

[참조] 국내 소득세 신고 인원 현황 (2018년)

	인원 (만명)	소득금액(조원)	일인당(만원)	세목
근로소득연말정산	1,858	682	3,669	원천세 (근로소득)
사업소득신고	789	121	1,534	소득세
일용근로자	777	63	809	장려세제
특고	146	22	1,491	원천세 (사업소득)
프리랜서	85	12	1,383	원천세 (사업소득)
중복제외합계	3,129	899	2,873	

주 : (1) 사업소득 신고자는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것임. 사업소득 신고자중 과세자는 502만명임. (2) 특고와 프리랜서 인원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자에서 다단계판매, 기타자영업, 병의원 종사자 인원을 제외한 것임. (3) 특고는 보험설계, 음료배달, 방판외판, 모집수당, 간병인, 대리운전, 행사도우미, 물품배달자를 가리킴. (4) 프리랜서는 방송, 예술, 체육계 종사자, 학원강사 등이 포함됨.

덴마크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똑같이 일정 비율을 부과하여 노동시장기여금을 조성하고, 임금노동자와 자영자에게 소득에 비례하는 실업급여를 지급 -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조세적 성격의 노동시장기여금 납부 뿐 아니라 입장료 성격의 정액 보험료도 납부 - 임금과 자영을 겸업하거나 자주 오가는 경우에도 손쉽게 적용 - 실업보험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기초실업수당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에 자영업자를 실업보험체계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 개혁 - 기존에는 임금노동자에게만 실업보험을 적용하고, 기여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50%씩 부담하는 제도였음 (현행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보험 가입은 임의가입(켄트제도) - 2018년 기준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77% - 일정액의 월 가입비(한화 약 8만원)가 실업보험 재원의 약30% - 나머지 70% 재원은 '노동시장 분담금'(labour market contribution)으로 조성된 '노동시장기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8%씩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국세청이 징수. 이 기금으로 실업급여 이외에 상병수당과 부모휴가급여로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의 2.4%를 납부하던 임금근로자의 실업보험료를 폐지하는 대신 사회보장세인 일반사회기여금(General Social Contribution)을 1.7%p 인상 - 임금노동자는 소득의 7.5%에서 9.2%로 인상하고 자영업자는 8.0%에서 9.7%로 인상. 근로자 임금의 4%를 내던 고용주의 기여분은 그대로 유지 - 다만,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급여액과 지급방식은 통일하지 못하였음. 임금노동자는 소득비례급여. 자영업자는 월800유로 정액 급여
---	---

* 자료 : 흥민기·장지연(2020),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 정의당·심상정 의원실 자료 필자 요약.

- 과거 학교에서 받는 '개근상', 직장에서 주는 '정근상'을 다른 무엇보다 표준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음.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지던 전근대적인 국가의 모습이었음. 코로나19 시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 대부분은 임금이 낮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반면, 유급휴가나 병가 등이 없는 곳임. 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 한국만이 거의 유일무이하게 질병상병수당이 없는 곳임.

[참조4] 프랑스 사회보험 분담 각 영역별 현황 (2017)¹¹⁾

노동자 사회보장 분담률 Urssaf 납부	전체 %	사용자 부담	노동자 부담	부과대상 소득
건강보험(질병, 출산, 장애, 사망) (1)	7.00(최저임금*2.5) 또는 13.00	7.00 또는 13.00		급여 총액
연대·자립 기금(노인·장애인 장기 돌봄)	0.30	0.30		
가족 수당	3.45(최저임금 * 3.5) 또는 5.25	3.45 또는 5.25		
비계약 노령 보험	2.30	1.90	0.40	
주택 기금 (20인 이상 사업장)	0.50	0.50		
사회적 대화 분담금 (조합 기금)	0.016	0.016		
산업재해	회사별 다름 (연금·산재보험 기금)			
공제가능한 일반사회보장분담금 (CSG)	6.80		6.80	급여 총액에서 1.75% 공제 (직무 비용)
비공제형 일반사회보장분담금	2.40		2.40	
사회적부채상환분담금(CRDS)	0.50		0.50	사회보장 (임금)상한 *1 이하의 급여
급여상한 노령 연금	15.45	8.55	6.90	
주택 기금(20인 미만 사업장)	0.10	0.10		
실업 기금(3)	4.05	4.05		사회보장 상한*4 이하의 급여
임금보장 보험(AGS) (4)	0.15	0.15		
합계	43.016 ~ 50.816 (교통분담금 포함)			

주 : 프랑스는 2018년 법 시행 이후, 고용보험의 노동자 부담 2.4%를 국가가 일반사회기여금으로 부담
 자료 : 프랑스 사회보험 관리기구(ACOSS) 면담자료 필자 재구성(2019.9.24.)

11) 임금의 2.4%를 납부하던 임금노동자 고용보험료가 폐지되고 이 부분의 재정은 사회보장조세인 일반사회기여금(General Social Contribution)으로 정부가 총당함. 국가가 조세로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커지게 되었음. 일반사회기여금(CSG)은 모든 소득에 적용이 되는 사회보장세임. 세율은 소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어 근로소득(revenus d'activit salariee)은 7.5%, 실업급여(revenus du ch mage)는 6.2%, 상병급여(indemnites journaliees)는 6.2%, 퇴직연금 및 장애연금(pensions de retraite et d'invalidite)은 6.6%, 재산소득(revenus du patrimoine et de placement)은 8.2%, 게임 등 사행소득에 대해서는 9.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구분	전 국민 기본소득 - 소득안전망-	전 국민 고용보험 - 사회안전망-
정책 취지	경제정책(?)	사회정책 (고용노동시장·사회복지정책)
소득대체 (대상)	월 10만원 (일괄 지급)	최저임금 80% (대상자 하한액: 월 180만원)
지급 시기	매월 지급(현금)	4개월~9개월
적용 혜택	전 국민 소득 지원	실직자 실업급여, 고용안정자금, 교육훈련, 육아출산급여 지원
총 비용 (연간)	62조원	19조원 1) 취업자&실직자(고용보험) 2) 저소득 취업자(EITC, 일자리안정자금) 3) 미취업자(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부조)
재정 방식 현재 논의 진행 항목	증세 없으나, 월 지급 금액 상향 시 가. 국토보유세 나. 원천징수 소득세 다. 데이터세, 로봇세 등	가. 실업급여 9조원(현재 지출) 나. 추가 자원 1.5조원 (추가 재정분) 다. 근로장려금 4조원 (현재 지출) 라.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현재 지출) 마. 국민취업지원제도 1조원 (2021년 시행)
실행 국가 지역/단위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내 일부 지역(주/도시) 한시적 실험 운영	덴마크, 프랑스 2019년 전면 시행 (다수 유럽 국가 사회보장제도 시행)

- 현재 근로기준법(60조 유급연차휴가)에서 정규직은 휴가나 병가 등을 보장받지만, 비정규직 중 특히 임시일용직,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는 이런 조건을 부여 받지 못한 상황이나, 아프면 쉬다는 것은 당일 소득(일당)이 줄어드는 것이나, 쉴 수 없는 구조.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휴가(무급 10일 : 코로나19로 한시적 5일 유급 → 10일 유급)조차 무급이라 사용 못하는 상황임.
- 따라서 고용보험 개편이후 사회적 논의는 ‘유급병가’(상병·질병수당, 가족부모돌봄휴가) 논의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영국(1911), 프랑스(1914), 독일(1924), 스웨덴(1934), 미국(1938), 일본(1947) 등 대부분 OECD 회원국의 고용보험 도입은 산업화와 함께 시작했음. 한국의 고용보험은 1995년 법률 제정·시행 이후 1998년 본격 시행되었으나, 사실 1946년 대한민국 헌법에는 ‘실업보험·폐질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가 적시되어 있음. 어쩌면 현재의 ‘전 국민 고용보험’ (취업자) 도입 논의는 사회보장제도를 재설계하는 국가의 재발견일 지도 모름.
- 현 시기 필요한 것은 긴급성과 정책의 상상력이며, 정책은 가장 절실하고, 절벽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그 순간 도움이 되어야 함. 코로나19로부터 신속한 회복은 그리 밝지 않지만, 우리들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위기 극복 과제로 보편적 사회적 보호와 불평등 해소를 꼽고 있음.

[참조5] OECD 회원국 사회보장제도 실질 커버리지 현황(2017)

국가	최소 적용률 ¹⁾	사회보장제도 적용률					
		아동 ²⁾	모성 ³⁾	장애편자 ⁴⁾	실업 ⁵⁾	노령 ⁶⁾	취약계층 ⁷⁾
오스트리아	98.6	100.0	100.0	93.3	100.0	100.0	93.0
벨기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덴마크	89.5	100.0	100.0	100.0	66.8	100.0	63.7
에스토니아	98.4	100.0	100.0	100.0	41.5	100.0	91.7
핀란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프랑스	100.0	100.0	100.0	100.0	94.7	100.0	100.0
독일	99.5	100.0	100.0	73.6	100.0	100.0	96.0
그리스	100.0	...	21.0	77.4	...
아이슬란드	100.0	100.0	28.6	85.6	...
아일랜드	90.1	100.0	100.0	100.0	100.0	95.8	73.8
이태리	100.0	100.0	37.8	100.0	...
룩셈부르크	100.0	100.0	41.0	100.0	...
네덜란드	97.5	100.0	100.0	100.0	73.0	100.0	90.3
노르웨이	95.8	100.0	100.0	100.0	61.8	100.0	83.1
포르투갈	90.2	93.1	100.0	89.2	42.1	100.0	59.3
슬로베니아	100.0	79.4	96.0	100.0	26.2	100.0	100.0
스페인	80.9	100.0	100.0	83.5	45.3	100.0	45.0
스웨덴	100.0	100.0	100.0	100.0	25.9	100.0	100.0
스위스	92.7	100.0	100.0	100.0	60.7	100.0	70.2
영국	93.5	100.0	100.0	100.0	60.0	100.0	76.6
체코	88.8	...	100.0	100.0	36.0	100.0	32.0
헝가리	86.2	100.0	100.0	100.0	17.4	100.0	56.0
폴란드	84.9	100.0	100.0	100.0	15.5	100.0	52.0
슬로바키아	92.1	100.0	100.0	100.0	9.8	100.0	70.0
이스라엘	54.9	90.4	29.4	99.1	...
미국	76.1	100.0	27.9	100.0	31.0
캐나다	99.8	39.7	100.0	67.2	40.0	100.0	99.0
멕시코	50.3	25.0	64.1	34.0
터키	5.0	1.4	20.0	...
일본	75.4	55.7	20.0	100.0	...
한국	65.7	5.8	40.0	77.6	...

* 주: 1) 최소한 한 영역이라도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인구의 비율. 전체 인구에서 기여 또는 비기여 제도를 포함해 한 제도에서라도 급여를 제공하는 비율. 2) 아동 중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비율(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비율). 3) 출산시 모성급여를 제공하는 여성의 비율(당해 년 도 출산여성 중 모성급여를 제공하는 비율). 4) 장애급여를 지급받는 비율(중증 장애인 중 장애급여를 지급받는 비율). 5)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비율(전체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비율). 6) 노인 중 연금급여를 받는 비율(법정 퇴직 연령 이상의 인구 중 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며, 기여와 비기여 연금급여를 모두 포함함). 7) 취약계층이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비율(전체 취약계층 중 취약계층을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 비율).

* 자료: ILO(2017)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Universal social protection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eneva: ILO. pp. 240-247

토론 1

직장갑질119 사례로 본 코로나19 긴급과제

오진호 | 직장갑질 119 활동가

직장갑질119 사례로 본 코로나19 긴급과제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0. 직장갑질119의 코로나 대응

- 2월 23일, 코로나 대응 수준 심각으로 격상 ▶ 직장갑질119로 코로나 갑질 제보 증가
- 3/8부터 코로나 특별 대책반 운영 (코로나 이메일 상담은 48시간 내 답변)
- 3/1부터 발행한 보도자료 22건 (제보사례, 제보통계, 긴급 설문조사, 직종별 설문조사 등)
- 직장인이 알아야 할 코로나19 정보 공유 (카드뉴스 등, 총 블로그 방문 5월까지 75,000건)
-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코로나19와 직장생활변화'
: 1차 조사 발표(4/27), 2차 조사 발표(6/22 예정)

1. 3월 제보 통계로 본 코로나19

- 직장갑질119로 3월 한 달간 들어온 이메일과 카카오톡 제보 전수분석
- 총 3410건 제보 중 코로나 갑질 제보는 1,219건으로 37.3%를 차지
- 갑질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급휴가(휴직, 휴업) 강요가 483건(39.6%), 불이익(기타) 253건 (20.8%), 해고·권고사직이 214건(17.6%), 연차강요 99건(13.9%), 임금삭감 99건(8.1%)순
- 해고·권고사직이 가파르게 증가. 3월 1주에는 코로나 제보 중에서 해고·권고사직 비율이 8.5%였는데, 3월 4주에는 27.0%로 3.2배 증가.
- 연차강요에서 시작해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고 있었음

	건	일반 상담 (건)	코로나갑질 (건)						상담 총계 (건)
			합계	무급 휴가	연차 강요	해고 권고사직	임금 삭감	불이익 (기타)	
1주 (1일-7일)	건	526	247	109	35	21	25	57	773
	비율	68.0%	32.0%	14.1%	4.5%	2.7%	3.2%	7.4%	100.0%
		코로나 비율	100.0%	44.1%	14.2%	8.5%	10.1%	23.1%	
2주 (8일-14일)	건	535	376	166	56	55	30	69	911
	비율	58.7%	41.3%	18.2%	6.1%	6.0%	3.3%	7.6%	100.0%
		코로나 비율	100.0%	44.1%	14.9%	14.6%	8.0%	18.4%	
3주 (15일-22일)	건	542	315	117	43	67	28	60	857
	비율	63.2%	36.8%	13.7%	5.0%	7.8%	3.3%	7.0%	100.0%
		코로나 비율	100.0%	37.1%	13.7%	21.3%	8.9%	19.0%	
4주 (22일-28일)	건	403	185	66	9	50	8	52	588
	비율	68.5%	31.5%	11.2%	1.5%	8.5%	1.4%	8.8%	100.0%
		코로나 비율	100.0%	35.7%	4.9%	27.0%	4.3%	28.1%	

2.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를 통해 본 직장인의 변화(4월 조사)

- 2020년 4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가 줄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0.8%)이 정규직(32.2%)에 비해, 서비스직(62.2%)이 사무직(31.8%)에 비해 두 배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도 비정규직(66.3%)이 정규직(35.0%)에 비해, 서비스직(66.9%)이 사무직(35.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급휴업을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이 19.5%로 정규직(8.0%)에 비해 두 배 이상, 권고사직·해고 역시 비정규직이 8.5%로 정규직(3.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음.

		사례수	연차휴가 사용 강요	무급휴업 강요	권고사직/해고 /계약해지	임금삭감/ 임금반납	가족돌봄휴가 사용 불허
합계		(1,000)	13.2	12.6	5.5	12.3	4.8
고용 형태별2	상용직	(600)	15.3	8.0	3.5	11.3	4.3
	비상용직	(400)	10.0	19.5	8.5	13.8	5.5
직업별1	사무직	(500)	13.4	7.8	3.8	9.4	3.6
	생산직	(178)	12.9	15.7	6.7	11.8	8.4
	서비스직	(299)	14.0	19.7	8.0	17.7	5.0
	기타	(23)	0.0	0.0	0.0	8.7	0.0

3. 5월 제보로 본 코로나 갑질

[무기한 무급휴직] 헬스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있어 무급 휴직 동의서 관련해서 여쭙볼게 있어 메일을 남겼습니다.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휴직중입니다. 4월까지 는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는데 5월 재정악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급 휴직 동의서에 따라 6월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까지만 휴관할 것이라는 말에 동의서에 동의를 했고 6월까지 휴관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무급 휴직에 동의 했다는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5월에 무급휴직 동 의서를 쓸 때 기한을 '5월~코로나 진정시까지'로 쓰여 있었는데 이러면 무급휴직 기간을 무기한 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직장인 A씨, 5월)

[무급휴직 거부 인사발령] 공항 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진 퇴사를 하면 권고 사직 처리를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권고는 없고 6월부터 근무일의 절반을 무급휴직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진퇴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무급휴직 동의도 하지 않 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출근을 하라고 하더니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면세점에서 일이 없으니 3시간 넘게 걸리는 물류센터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부 당전직 아니냐고 항의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B씨, 5월)

[정부지원금 실업급여] 코로나 여파로 퇴사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챙겨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모든 행사와 여행업무가 취소되면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걸 신청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때문에 저에게 실업급여를 써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실업급여를 정말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건데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직장 구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서요. (직장인 C씨, 5월)

[4인이하 고용보험 미가입] 3-4인 규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텍스에서 소득 조회를 했으나 소득이 전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확인, 건강보험 미납 확인, 고용보험 납부 내역 확인 불가. 대표에게 요구했으나 5년 안에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월급도 2개월째 밀린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 보험 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계속 밀려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하는데ㅠㅠ 제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인 D씨, 5월)

4. 사례로 본 긴급과제

- 위기로부터 직장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취약함이 확인되고 있음.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서비스직 등 불안정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한 수준.
- 일자리방역 대책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대한 설계 역시 중요한 문제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즉시 추진되어야 할 긴급대책 마련이 시급.

①해고·권고사직 일시중지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해고회피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하지만 제보사례를 통해 봤을 때 노동조합 밖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라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지만, 정부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챙겨먹으려는 사용자들이 자진퇴사를 강요하고 있음.
- 무급휴가와 자진퇴사 중 하나를 고르라는 잔인한 선택이 이어지고 있으며, 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은 회사의 협박에 못 이겨 자진퇴사라는 이름의 '코로나 해고'를 당하고 있음.
- 해고와 권고사직 일시 중지 대책과 함께 신고센터(무급휴직 신고센터가 현재 있으나 유명무실)를 활성화하는 방안(접수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추진, 사직강요 증거 확보 시 보조금 제한 등)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을 해고와 권고사직으로부터 구제해야 함.

②모든 취업자 실업급여 지급

- 2020년 6월 대한민국 취업자 1401만 명은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고용보험 밖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도, 고용보험법도 먼 나라 이야기.
-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는 입사할 때 3개월 인턴 후 정직원 전환이 조건이었는데 조건과는 다르게 회사에서 맘대로 개인사업자로 해서 프리랜서처럼 고용을 하고, 프리랜서로 3.3퍼센트 떼고 월급 받으며 일함. 이렇게 근로계약서도 4대보험도 없이 일한 노동자는 당장 휴업수당도 못 받고, 고용유지지원금 대상도 아니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함.
- 주민등록에 등록되지 않은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땀흘려 일하는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고용보험 미등록 노동자들은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고용보험 미등록 노동자들을 임시가입자로 편입해 고용유지지원금 수준(평균임금의 63%)를 지원하는 방식과 같은 긴급대책이 필요

③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프면 3~4일 쉴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직장 분위기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물어본 결과 비상용직의 51.0%(상용직은 44.0%)가 그렇다고 응답함.
-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정부의 코로나 생활방역 행동수칙이 무급일 경우 ‘집에서 쉰다’고 응답한 비율은 50.0%에 불과.
- 쿠팡 발 집단감염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불안정노동은 코로나방역에도 치명적 요소. 특히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회사(중소영세기업) 직원이나 특수고용(프리랜서)종사자들은 있는 휴가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이마저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함.
- 유급병가 제도를 비롯한 휴가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불안정노동자(일용직, 특수고용, 계약직 등)들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상병수당(아프면 쉬고, 소득보전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하여 아파도 3~4일 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함.

토 론 2

정성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코로나19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토론회 토론문

정성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남

- 과거 경제위기는 제조업 생산직,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 중심으로 구조조정 규모가 컸으나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에 기반한 산업들 중심으로 취업자가 큰 규모로 감소하고 있음.
- 남성보다는 여성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고, 임시직과 자영자 중심으로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현재까지 일자리감소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일시휴직자가 100만 명이 넘어 유례없이 많은 것은 커다란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이들이 언제 실업과 비경활이 될지 모르는 상황임. 현재까지 일시휴직은 상용직 중 제조업을 비롯해 여성이 많은 숙박음식, 교육, 보건복지업과 자영업 중 교육서비스, 도소매, 운수창고업에 몰려 있음.
- 2020년 3월 본격화된 취업자 감소는 실업보다는 비경활로 이동해 경찰의 비경활화가 진행되고, 청년, 여성, 고령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주로 통학(청년층), 육아가사(여성층), 쉬었음(고령층, 졸업청년)의 사유로 급격하게 증가함.
- 그러나 비경활 중 상당수가 잠재구직자로 이들은 구직가능성이 높아지면 실업자로 진입하게 되는데, 5월 들어 취업자 감소분이 실업자로 이동해 적극적 구직활동이 본격화됨을 보여주고 있음.

〈표 1〉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

(단위 : 천명)

	전체			남성			여성		
	취업	실업	비경활	취업	실업	비경활	취업	실업	비경활
2020. 01	568	-71	-151	224	-67	50	344	-4	-201
2020. 02	492	-150	-26	162	-76	93	330	-74	-119
2020. 03	-195	-17	516	-81	-48	295	-115	31	221
2020. 04	-476	-73	831	-183	-72	401	-293	-1	430
2020. 05	-392	133	555	-153	47	268	-239	86	288

자료 : 통계청, KOSIS.

○ 돌봄노동과 노동환경에서의 여성노동의 취약성

-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사회적 돌봄의 부재와 노동환경의 취약함 등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함.
- 아이, 장애가족, 노인돌봄을 비롯해 학교와 같이 집단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동을 멈추고 지원센터인 공공기관들이 폐쇄조치되면서 가정내 돌봄으로, 이는 여성에게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침.

- 또한 거의 여성이 대부분인 콜센터, 방문판매 등과 같은 대면접촉서비스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열악한 노동환경문제도 지적되었었음. 문제는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서비스업에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임.

○ 지금보다 더욱 전면적이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

- 정부의 특별대책은 재직자의 고용유지강화, 소득보전, 일자리창출, 실업자 생계 및 재취업지원으로 볼 수 있음.
- 금융위기나 수요둔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감염병이라는 불가피한 위험이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 충격을 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소폭확대적용이나 복잡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됨. 특히 현재는 비상사국인데 고용유지지원금은 평소의 엄격한 조건을 약간만 완화한 정도라 문제임.
- 고용유지지원정책이 노동자의 숙련을 유지시키고 생활안정이 되도록 지원하여 사후 실업자 지원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음. 취업자 감소 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상황에서, 발표자의 실업급여보다는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직에 지원을 더 많이 해야한다는 논지에 동의함.
- 여기에 덧붙여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확대 지정 할 필요도 있음.
- 또한 취업자 감소가 확장실업을 중심으로 한 비경화로 유입되고 있고, 실업자로도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를 확대해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함.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확대도 필요한데, 현재 50만원으로 책정된 금액은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수준으로 빈곤층 생계유지용 금액이라 실효성이 떨어져 최소 두배이상 확대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기존 실업급여수급 범위에 속하지 않은 계층(사실상 실업자)에게 12월 말까지 실업급여액의 절반을 지급하고, 7월말까지 주당 600달러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장기화를 염두한 대응마련도 시작해야함

-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올 가을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해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안전망체계를 가질수있도록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 처리와 기존 고용유지관련 제도 보완에 노력을 집중해야 함.
- 또한 만약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하여 장기화될 경우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청년 노동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됨. 올해도 힘들었던 청년 신규취업은 올 연말, 내년 초 상당히 힘들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누적된 청년미취업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접일자리사업의 실효성에 문제제기함. 과거 금융위기 이후 청년인턴사업의 문제점들을 경험한 바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일자리에 청년이 얼마나 유입되어 노동시장으로 편입될 것인지 고민해야 함.
- 취업지원금을 일시적으로 높여 우선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채용보조가 필요함.
- 그리고 기존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노동환경개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돌봄, 대면서비스 콜센터 등 밀집된 열악한 환경에서의 취약성이 이미 드러난 바 향후 이와 같은 위기에 대응을 위한 노동환경기준을 마련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기준, 방역기준강화 등 실질적 개선대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거의 여성이 대부분인 콜센터, 방문판매 등과 같은 대면접촉서비스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열악한 노동환경문제도 지적되었었음. 문제는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서비스업에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임.

○ 지금보다 더욱 전면적이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

- 정부의 특별대책은 재직자의 고용유지강화, 소득보전, 일자리창출, 실업자 생계 및 재취업지원으로 볼 수 있음.
- 금융위기나 수요둔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감염병이라는 불가피한 위험이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 충격을 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소폭확대적용이나 복잡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됨. 특히 현재는 비상사국인데 고용유지지원금은 평소의 엄격한 조건을 약간만 완화한 정도라 문제임.
- 고용유지지원정책이 노동자의 숙련을 유지시키고 생활안정이 되도록 지원하여 사후 실업자 지원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음. 취업자 감소 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상황에서, 발표자의 실업급여보다는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직에 지원을 더 많이 해야한다는 논지에 동의함.
- 여기에 덧붙여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확대 지정 할 필요도 있음.
- 또한 취업자 감소가 확장실업을 중심으로 한 비경화로 유입되고 있고, 실업자로도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를 확대해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함.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확대도 필요한데, 현재 50만원으로 책정된 금액은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수준으로 빈곤층 생계유지용 금액이라 실효성이 떨어져 최소 두배이상 확대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기존 실업급여수급 범위에 속하지 않은 계층(사실상 실업자)에게 12월 말까지 실업급여액의 절반을 지급하고, 7월말까지 주당 600달러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장기화를 염두한 대응마련도 시작해야함

-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올 가을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해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안전망체계를 가질수있도록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 처리와 기존 고용유지관련 제도 보완에 노력을 집중해야 함.
- 또한 만약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하여 장기화될 경우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청년 노동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됨. 올해도 힘들었던 청년 신규취업은 올 연말, 내년 초 상당히 힘들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누적된 청년미취업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접일자리사업의 실효성에 문제제기함. 과거 금융위기 이후 청년인턴사업의 문제점들을 경험한 바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일자리에 청년이 얼마나 유입되어 노동시장으로 편입될 것인지 고민해야 함.
- 취업지원금을 일시적으로 높여 우선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채용보조가 필요함.
- 그리고 기존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노동환경개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돌봄, 대면서비스 콜센터 등 밀집된 열악한 환경에서의 취약성이 이미 드러난 바 향후 이와 같은 위기에 대응을 위한 노동환경기준을 마련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기준, 방역기준강화 등 실질적 개선대안을 마련해야 함.

토론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과 복지 측면의 과제

남재욱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토론문] 코로나19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과 복지 측면의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남재욱

■ 발제에 관한 의견

- 황선웅 교수님의 첫 번째 발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방역과 달리 고용 측면에서는 사전적 예방보다 사후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으며, 예방적 조치로서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 고용의 '유지'를 전제로 할 필요성은 전체적 위기의 사회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함. 즉, 감염병 위기 → 경제위기 → 고용위기로 이어지는 연쇄에서 실직을 전제로 한사회적 보호는 고용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와 사회가 나누어지는 것임. 그러나 여기에 실직 자체를 막는 접근이 더해질 때 노동자, 기업, 사회가 위험을 좀 더 고르게 분담하는 방안이 될 것임.
- 일자리의 보호보다는 신속한 재취업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널리 알려진 '유연안정성' 국가 덴마크 역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Short-work-work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지금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 평상시의 접근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물론 고용유지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해도 실직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특히 노동시장 외부자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위험은 확산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기적인 위기대응 뿐 아니라 장기적인 생산성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임.
- 김종진 연구위원님의 발제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에 미칠 영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보편적 사회적 보호와 불평등 극복이라는 큰 과제들 및 그와 관련된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 최근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고용보험의 보편성 제고(전국민고용보험, 혹은 취업자 고용보험, 소득중심 고용보험 등 무엇이든 명명하든)는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 제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숙제로 제기되었다는 점에 동의함. 향후 이에 관한 논의가 무성한 말잔치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성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질병수당-유급휴가-병가 등 '아플 때 쓸 수 있는 실질적 권리'의 보장 역시 중요한 숙제라는 점에 동의함. 코로나 위기는 개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외부성을 극단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감염병의 위험이 뉴 노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아플 때 쉴 수 없는 문화’는 이제 개인의 권리박탈일 뿐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의 생산성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

-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숙제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일’과 관련한 측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제도의 한계’와 ‘노동자의 취약한 협상력’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꼽고 있음.
- 첫 번째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의 제도가 갖는 한계로부터 벗어나 ‘모든 일 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함.
 - 코로나 위기에서 첫 번째로 위험을 겪은 사람들은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전통적인 사용자-피용자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임. 이들은 경제위기의 충격을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직접적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고용관계를 전제로 성립된 사회적 보호의 밖에 위치하고 있어 일에 있어서의 충격이 그대로 삶 전체의 충격으로 전이되고 있음.
 -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에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종전의 제도들이 점점 다양해지는 일하는 방식과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을 둘러싸고 자영업자나 특고 노동자의 소득파악과 같은 해묵은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 역시, 그간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가 이들을 배제해온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적 어려움을 들어 이들을 제도 안으로 통합하는데 유보적이거나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악순환을 재생산하겠다는 것일 따름임.
 -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적 보호의 영역에서 ‘임금근로자’가 아닌 ‘모든 일 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임. 단지 고용보험 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보호의 영역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뿐 아니라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함.
 - 물론 이것은 임금노동자를 비임금노동자로 오분류함으로써 규제차익을 누리는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님. 오히려 고용형태와 무관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설계하고 경제주체들이 이에 포괄적으로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오분류의 차익을 감소시키는 조치가 필요함.
- 두 번째로 ‘일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일터에서 ‘들려질 권리’를 보장해야 함.
 - 김종진 연구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염병 상황에서 몸이 아파도 출근하는 사람의 문제, 콜센터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 적정 노동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문제, 노동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문제는 모두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극심한 권력관계의 불평등과 관련이 깊음.

-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조차 신청하지 않고 덜컥 무급휴직을 시행함으로써 생계를 위협받게 된 노동자들의 사례 역시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생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조차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이는 결국 한국 노동자들의 취약한 '협상력'과 관련된 문제들로 향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역시 코로나 시대가 노출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숙제임. 즉,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을 재설계 하는데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과제라는 것임.
-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1차적인 제도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합을 비롯한 이해대변구조의 확충을 통해 노동자가 단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것임.
- 그러나 좀 더 종합적으로 보면, 노동자 개인차원, 사업장 조직차원, 그리고 전체 사회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노동자 개인 수준에서는 각각의 노동자가 사업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숙련을 개발하고, 개발된 숙련이 사회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작업장 차원에서 일터의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사회적 차원에서 모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 복지제도의 확립 등이 모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과제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지'

- 코로나19 위기는 한국의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도 숙제를 남겼는데, 이 중 고용 중심의 기존 사회보험 제도가 갖는 한계는 앞서 언급한 것과 중복되므로 논외로 하자면, 사회서비스 영역의 과제와 선별적 복지의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은 사회적 필수노동으로서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동시에 사회서비스 부문의 열악함을 드러내기도 함.
 - 보건의료, 돌봄, 요양 등 사회서비스 영역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 필수노동으로서의 중요성이 확인됨과 동시에 그 취약성이 드러남. 한국 뿐 아니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도 노인요양시설은 감염병 확산의 위험지역임이 드러났지만, 정작 사회서비스 영역 종사자는 해고위험과 감염위험, 그리고 소득감소의 삼중고 속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임.
 - 사회서비스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는 필수서비스라고 할 때 이 영역에서 어떻게 감염의 위험을 통제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서비스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필요로 함.

- 사회서비스 영역의 해묵은 과제이기도 한 일자리의 질 문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두드러짐. 부족한 사회적 보호와 열악한 근로환경,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 등 한국의 불안정 노동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매우 두드러지며, 이는 감염병 위험에 대한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한 요인임.
- 사회서비스는 흔히 저생산성 영역으로 취급되지만, 감염병 위기 속에서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으며, 사회서비스가 가져오는 인적자본 측면의 외부효과나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면 단지 저생산성 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음. 코로나 위기 상황은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과 사회서비스의 질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 또 한 가지 과제는 복지에서의 ‘선별’ 문제임.

- 최근 한국의 복지제도에 관한 논의는 ‘보편적 복지’ 및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본소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사실 보편적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보편적·선별적 프로그램의 합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어떻게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의 기반을 확보할 것인가?’에 못지않게, ‘어떻게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선별할 것인가?’는 중요함.
- 그런데 한국에서 ‘선별’을 거치는 거의 대부분의 제도는 급여의 ‘수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수급하는 것’(1종오류)를 막는 것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수급 대상이 수급하지 못하는 것’(2종오류)를 지나치게 많이 발생시키고 있음. 최근 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에서 올해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다수 탈락했다는 보도는 이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복지는 연구설계가 아님. 연구설계에서 1종오류를 막는 것은 일반적으로 2종 오류를 막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들의 삶이 걸려 있는 복지에서도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음.
- 복지에서 ‘선별’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그러나 한국에서의 ‘선별’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잔여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도 그 문제가 드러났음. 따라서 향후 한국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복지 프로그램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역시 재난 상황이 우리에게 부여한 숙제라고 할 것임.

토 론 4

이주희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 론 문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1. 진단

-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진단의 어려움: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 대한 분석도 어려운 상태
- 코로나 이전에도 상시적 재정위기와 국가부채, 가계부채 동반 상승: 국가부채 증가의 주 원인: 최상층과 거대 다국적 기업의 국가재정 기여 감소
-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처럼 양적완화로 과연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인가? 그 당시 도움이 되었던 중국의 역할을 현재의 중국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나쁜 관행 한 순간에 폭발한 것; 아마도 프리 코로나 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
- 코로나바이러스를 백신이나 치료제로 제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큰 변수로 남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임. 반 세계화 추세(국가 간 물리적 이동(여행 등 포함) 감소) 등장, 글로벌 공급체인 교란, AI등 자동화 급증(노동력 수요 감소), 소비 감소, 경기 침체 장기화,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악화 등
- 의료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실업과 일자리 감소에 대처하는 국가의 역할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2. 대안: 발제문 내용 중심

일터 노동시간 변화 관련/ 위기 시 고용유지 방안의 관점에서

- 노동시간의 재구조화: 주 40시간 법정 노동시간의 변화 기대
- 노동시간 규제 3가지 경로: Unilateral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 미국)/ Negotiated (노사 자율합의; 스웨덴)/ Mandated (법 제도적 규제; 프랑스) (Berg et al. 2014)
- 위 세 모델의 경우 노동자 친화적 유연성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다름. 특히 위기 시 대처에 있어서의 차이는 주목해야.
- 미국: 사용자에게 해고의 자유 보장, 위기 시 일자리 나누기 관행 없음(제도 마련되어도 사용

를 저조)

- 스웨덴: 스웨덴은 실업 위기 시 노동자를 직접 보호함(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재훈련 제공). 단,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문제제기가 있긴 했지만 2008 위기 시 스웨덴 금속노조(IF Metall)는 일시해고 및 80% 임금소득보장에 합의, 피해 최소화 경험 있음
- 프랑스: 제도 의존도가 높아 제조업의 경우 독일만큼 유연한 작업시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 “부분실업(노동시간 줄이고 실업급여혜택)”제도 - 1968년 삼자합의에서 시작.
- 한국?

노동안전보건 분야

- 원청기업의 사용자 책임 인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디지털채용 시 차별 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 필요

전국민고용보험 관련: 기본소득과의 관계 재설정 필요- 둘 다 가능하고 할 수 있음

- 의료, 교육, 주거 관련 공공성 제고, 보편적 복지 확충도 전국민고용보험만큼 중요하며
- 공공서비스가 잘 갖추어졌을 경우 기본소득의 지급금액을 낮출 수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및 지원액 확대

3. 대안

배경: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과제

- 좋은 일자리에 대한 투자 감소: 자본주의의 끝없는 위기와 한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것인가?
- 양극화,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 국가의 역할과 재정지출은 점 점 더 증가하지만 조세기반의 한계로 재정위기 상시화: 조세 저변 확대 필요: 탄소세, 로봇세, 환경세, 토지보유세 등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결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정규직화 + 노동권 + 적정임금 + 무분별한 민간위탁 운영방식 개편

- 특수고용, 플랫폼, 간접고용 및 기타 모호한 고용관계 하의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기본권 부여, 간접고용의 경우 원청에 사용자책임 부여

- 비정직 사용사유제한

- ILO협약 비준 및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대표성의 문제: 노동운동 내부에서 조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의제의 문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최우선/ 사회적 대화의 지속가능성 확보 고려해야
 - 실행상의 문제: 국회가 장애물에서 제거된 상태-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역할 필요

